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2025. 6

건설업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해설 및 질의회시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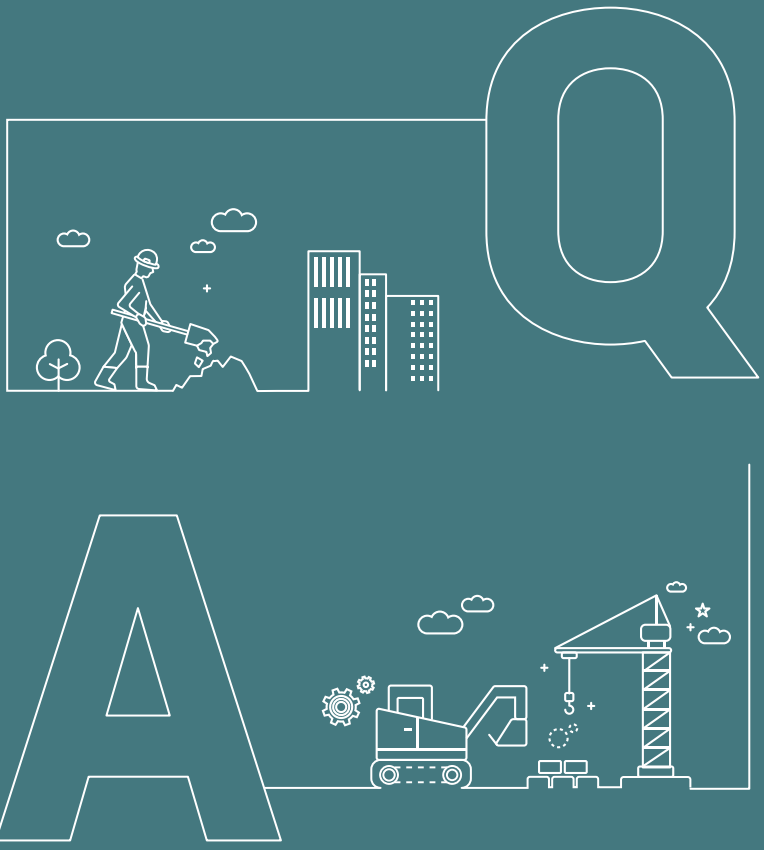

고 용 노 동 부
산업안전보건본부

2024년 1월 해설집 발간 이후 여러 차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이 개정되어 최근 2025년 2월 12일 개정된 고시까지 반영하여 해설집 및 질의 회시집을 새로이 발간하였습니다.

〈 고시 주요 개정 내용 〉

1. 공사종류 분류 전면개편('24.7.1~) 및 요율 인상('25.1.1~)

- 「건설산업기본법」 등 건설 관련법령을 기초로 하여 △건축공사, △토목공사, △중건설공사, △특수건설공사로 전면 재분류
- 공사특성을 반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 인상(평균19%)

2.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비 확대

- 임대·구입비용 인정 : '24년(40%) → '25년(70%) → '26년(100%)
- 산안비 총액의 사용한도 : 종전 10% → 20%('25.2.12~)

3. 모든 연간 단가계약 공사의 총계약금액이 2천만원 이상일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의무계상('25.1.1~)

4. 노·사 발굴항목 사용한도 확대

- 산안비 총액의 사용한도 : 종전 10% → 15%('25.2.12~)

5. 온열·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간이 휴게시설, 냉난방기 임대 등 품목 신설('25.2.12~)

6. 자율안전 확인대상 보호구(안전모, 보안경, 보안면) 추가('25.2.12~)

7. 산업재해 예방이 주된 목적인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인정('25.2.12~)

8. 주요 질의회신 Q&A 개선

- 기존 질의회신 현행화 및 신규(안전관리자 제도 추가 등) 질의회신 반영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 및 질의회시집

CONTENTS

01 해설집 ····· 1

Ⅰ. 총 칙 ····· 2
Ⅱ.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 5
Ⅲ.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 25
Ⅳ.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확인 ····· 36
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 ····· 38
Ⅵ. 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 ····· 41
Ⅶ. 위반 시의 조치 ····· 42

0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시문 ····· 45

제1장 총칙 ····· 46
제2장 산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 ····· 48
제3장 보칙 ····· 53
부칙 ····· 54
[별표1] 공사종류 및 규모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표 ····· 55
[별표1의2]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업무 수행 시 수당지급 작업 ····· 56
[별표1의3] 설계변경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계상 방법 ····· 57
[별표2] 삭제 ····· 58
[별표3] 공사진척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 58
[별표4] 삭제 ····· 59
[별표5] 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 ····· 59
[별지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 61
[별지2] 삭제 ····· 71

03 주요 질의 회신 Q&A ····· 73

제1장 총직(정의 및 적용범위) ····· 74

1) 단가 계약형태의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해야 하는지 ·· 75
2) 2개 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통합하여 사용 가능한지 ····· 76
3) 용역 계약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해야 하는지 ····· 77
4) 해외 건설공사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해야 하는지 ····· 78

제2장 계상의무 및 기준 ····· 79

1) 완제품에 해당하는 물품이 무엇인지 ····· 80
2) 발주자가 제공하는 관급자재비를 제외하고 계상하면 되는지 ····· 81
3) EPC 공사는 총공사금액으로 계상하는지 ····· 83
4) 공사내역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계상방법은 ····· 85
5) 차수분 계약도 '25.1.1부터 적용하는 비율을 적용해도 되는지 ····· 86
6)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구간에 기초액을 두는 사유 ····· 87
7) 수의계약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지하는 방법은 ····· 88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낙찰률 적용이 가능한지 ····· 89
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건설공사의 종류 및 담당 기관은 ···· 90
10) 반도체공장 건설공사는 공사종류 중에 어디에 해당 되는지 ····· 91
11) 주된 공사와 부대하는 공사, 시간적·장소적으로 독립하는 공사의 기준이 무엇인지 ····· 92
12) 설계변경시 당초 대상액(설계금액&낙찰금액) 기준이 무엇인지 ····· 93
13) 공사종류 개편('24.7.1)이전 공사의 설계변경시 비율 적용은 ····· 94

CONTENTS

14) 50억원 미만 공사가 설계변경으로 50억원 이상 공사로 변경된 경우 계상방법 ····· 95
15)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 설계당시 금액, 공정률도 고려해서 재계상 하는지 ····· 96
16) 토목공사는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1,000억원 이상 증액시 요율표를 참고하여 재계상 하면 되는지 ····· 97
17) 턴키공사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과소 계상되었을 경우 추가 계상이 가능한지 ····· 98

제3장 사용기준 ····· 99

1.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임금 등 ····· 99

1) 안전관리자 임금 지급 기준일을 언제로 보면 되는지 ····· 100
2) 안전관리자 임금에 포함되는 건강보험료 등도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항목으로 사용 가능한지 ····· 101
3) 안전관리자 퇴직금을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항목으로 사용가능한지 ····· 102
4) 안전관리자 연차수당 정산은 근무한 현장에서 하는게 맞는지 ····· 103
5) 안전관리자를 공동 선임하였을 경우 현장별 임금 분담 비율은 ····· 104
6) 관계수급인(100억원 미만)이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임금을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항목으로 사용 가능한지 ····· 105
7) 안전보조원 교육 출장시 임금 및 출장비를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항목으로 사용 가능한지 ····· 106
8)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현장에서 화재감시자 등 임금을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항목으로 사용 가능한지 ····· 107

9)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산재예방업무를 일부 수행한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을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항목으로 사용 가능한지 ····· 108
10) 작업지휘자 임금을 발주자가 인정하는 작업내용에 대해서만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항목으로 사용 가능한지 ····· 109
11) 관리감독자 업무수당 지급을 위한 기준이 있는지 ····· 110

2. 안전시설비 등(스마트안전 장비 구입·임대등) ····· 111

1) 추락안전매트 설치비용을 안전시설비 항목으로 사용 가능한지 ····· 112
2) 전산볼트용 추락방지대 구입비를 안전시설비 항목으로 사용 가능한지 ····· 113
3) PHC 말뚝 상부 덮개 구입비를 안전시설비 항목으로 사용가능한지 · 114
4) 텅스텐 논슬립 구입비를 안전시설비 항목으로 사용 가능한지 ····· 115
5) 전기, 정보통신 등의 공사에서 교통안전표지판 설치비용을 안전시설비 항목으로 사용 가능한지 ····· 116
6) 지게차 방호장치 설치비를 안전시설비 항목으로 사용 가능한지 ····· 117
7) 경보·유도시설 설치비용을 안전시설비 항목으로 사용 가능한지 ···· 118
8) 안전용역팀 투입시 용역비를 안전시설비 항목으로 사용 가능한지 ··· 119
9) 안전시설물을 설치할 때 용역으로 하는 경우와 안전보조원이 하는 경우 비용처리 항목은 ····· 120
10) 안전시설물 설치·해체 용역시 이윤 등 기타비용도 인정 가능 한지 ·· 121
11) 에어백 조끼 구입비를 안전시설비 항목으로 사용 가능한지 ····· 122
12) 안전관리 솔루션(Web/App)을 안전시설비 항목으로 사용 가능한지 ····· 123
13)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플랫폼 구축 비용을 안전시설비 항목으로 사용 가능한지 ····· 124

CONTENTS

14) 유해가스 모니터링시스템 구축비용을 안전시설비 항목으로 사용 가능한지 ····· 125
15) 소화기 구입·임대비용을 안전시설비 항목으로 사용 가능한지 ····· 126

3. 보호구 등(안전인증보호구, 안전·보건관리자 피복 등) ····· 127
1) 차광보안경 구입비용을 보호구 항목으로 사용 가능한지 ····· 128
2) 방안화 구입비용을 보호구 항목으로 사용 가능한지 ····· 129
3) 개인소유 안전순찰차량 유지비를 보호구 항목으로 사용 가능한지 ···· 130
4) 방염복 구입비용을 보호구 항목으로 사용 가능한지 ····· 131

4. 안전보건진단비 등 ····· 132
1) 위험성평가 컨설팅 비용을 안전보건진단비 항목으로 사용 가능한지 · 133
2) 타워크레인 안전검사 비용을 안전보건진단비 항목으로 사용 가능한지 ····· 134
3) 전기시설 정밀안전진단 비용을 안전보건진단비 항목으로 사용 가능한지 ····· 135

5. 안전보건교육비 등 ····· 136
1)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다른 법령상 의무교육만 안전보건교육비 항목으로 사용 가능 한지 ····· 137
2)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현장이 아니어도 안전보건 관련 도서 구입 비용을 안전보건교육비 항목으로 사용 가능한지 ····· 138
3) 안전기원제 행사 기념품 비용을 안전보건교육비 항목으로 사용 가능한지 ····· 139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 140

1) 배치전 건강진단 비용을 건강장해예방비 항목으로 사용 가능한지 ··· 141
2) 산소캔 구입비를 건강장해예방비 항목으로 사용 가능한지 ····· 142
3) 작업용 우의 구입비용을 건강장해예방비 항목으로 사용 가능한지 143
4) 안전화 건조기 구입비용을 건강장해예방비 항목으로 사용 가능한지 ··· 144
5) 작업장 방역 비용을 건강장해예방비 항목으로 사용 가능한지 ····· 145
6) 건강장해예방비 항목으로 구입 가능한 약품의 종류는 ····· 146
7) 건강관리실 설치비용을 건강장해예방비 항목으로 사용 가능한지 ·· 147
8) KF94 마스크 구입비용을 건강장해예방비 항목으로 사용 가능한지 ··· 148

7. 본사 전담조직 근로자 임금 등 ····· 149

1) 시공능력 200위 이내일 경우 토목건축공사업 외 다른 업종은 본사 전담조직 근로자 임금 항목 사용이 가능한지 ····· 150
2) 본사 전담조직 임금을 현장별로 나누어 사용 가능한지 ····· 151

8. 위험성평가 등을 통해 사용 가능한 비용 ····· 152

1) 위험성평가 등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이 무엇인지 ····· 153
2) 위험성 평가 및 노사협의 등을 통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을 결정하는 절차는 ····· 154
3) 미인증 보호구 구입비용을 위험성 평가 등을 통해 사용 가능한지 ····· 155
4) 방한용품 구입비용을 위험성평가 등을 통해 사용 가능한지 ····· 156
5) 휴게시설 의자 구입비용을 위험성평가 등을 통해 사용 가능한지 ·· 157

CONTENTS

9. 사용불가 항목 ····· 158

1) 오후에만 신호수 업무를 한 경우 임금을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항목으로 사용 가능한지 ····· 159
2) 비계에 설치하는 안전난간의 설치비용을 안전시설비 항목으로 사용 가능한지 ····· 160
3) 승강기 작업용 작업발판 설치비용을 안전시설비 항목으로 사용 가능한지 ····· 161
4) 방화포 구입비용을 안전시설비 항목으로 사용 가능한지 ····· 162
5) 도로공사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비용을 안전시설비 항목으로 사용 가능한지 ····· 163
6) 안전관리자 사무실 설치비용을 안전보건교육비 항목으로 사용 가능한지 ····· 164
7) 교육시 점심식사 비용을 안전보건교육비 항목으로 사용 가능한지 ··· 165
8) 간호사 보수교육 비용을 안전보건교육비 항목으로 사용 가능한지 ····· 166
9) 휴게시설 설치비용을 건강장해예방비 항목으로 사용 가능한지 ····· 167
10) 사다리 구입비용을 노사협의체 등에서 결정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가능한지 ····· 168

10. 공사진척에 사용기준 및 관계수급인 사용 ····· 169

1) 공정률에 따라 사용기준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지 ····· 170
2) 관계수급인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가능한지 ····· 171

제4장 사용금액의 감액·반환 등 ····· 172

1) 공동도급 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방법은 ····· 173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초과 사용시 정산이 가능한지 ····· 174

제5장 사용내역 작성 및 확인 ····· 175

1) 사용내역 확인시 공사시작 시점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 176
2) 안전용품을 사용전에 반드시 감리자 검수를 받아야 하는지 ····· 177

제6장 안전관리자 제도 관련 ····· 178

1) 차수공사에 대한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은 ····· 179
2) 공사기간 특례 적용시 안전관리자 선임 수는 ····· 180
3)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 181
4) 도급인이 대신하여 관계수급인의 안전관리자 선임이 가능한지 ····· 182
5)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선임이 가능한지 ····· 183
6) 여러개 현장이 동일지역에 있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안전관리자를 선임해도 되는지 ····· 184
7) '21년 착공 공사의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안전관리자 선임 면제 가능한지 ····· 185
8) 동절기 휴식기간 안전관리자 선임을 해지할 수 있는지 ····· 186
9) 시운전 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해야 하는지 ····· 187
10) 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겸직이 가능한지 ····· 188
11) 전담 안전관리자가 보건관리자 업무 겸직이 가능한지 ····· 189

01 해설집

Ⅰ 총 칙

가 목 적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발주자에게 공사종류 및 규모에 따른 일정금액을 도급금액에 별도 계상토록 하고, 시공자는 계상된 금액을 건설공사 중 안전관리자 임금, 안전시설비, 안전보건진단 등에 사용하도록 함

나 정 의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 등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이하 “대상액”이라 한다)이란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별표2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별지2의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를 포함)을 말한다.

   ※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공사(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등)는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 계획상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봄

3) “건설공사발주자”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건설공사발주자를 말한다.

4) “건설공사도급인”이란 발주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5) “자기공사자”란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을 제외한 건설공사도급인을 말한다.

6) “감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15호의 공사감리자

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국가유산감리원

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3호의 감리원

마)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의 감리원

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10호의 감리원

사)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라 감리 또는 공사감리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다 적용범위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 따른 건설공사 중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공사. 다만, 단가계약에 의하여 행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건설공사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2)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5)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

라 적용기준

1) 단가 공사의 경우

연초에 맺은 총계약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

2) 분리 발주 공사의 경우

건설공사발주자가 다수의 건설공사도급인에게 분리하여 발주한 공사는 각각 발주한 모든 공사의 도급금액을 합산한 공사금액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각 개별공사 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함

※ 건축공사(2억 원), 토목공사(1억 원), 전기공사(1천만 원), 정보통신공사(1천만 원)를 각각 분리 발주한 경우, 전체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이라 하더라도 개별공사의 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에는 적용되지 않음

Ⅱ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가 계상 의무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의무는 발주자 및 자기공사자에게 있음

【법 제72조】 ①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지 않았거나 적게 계상할 경우 즉시 적법하게 재계상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미계상 또는 부족 계상 시 건설공사도급인에게 법적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며, 이 경우 건설공사도급인은 발주자에게 계상 또는 재계상을 요구할 수 있음

나 계상 시기

1)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하여야 하고, 자기공사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 계상하여야 함

【고시 제4조】 ① 발주자가 도급계약 체결을 위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하거나, 자기공사자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이상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2)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아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한 경우, 추후 공사 시행 중 하도급 계약 등이 완료되어 대상액 구분이 가능하게 된 경우라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시 계상할 필요는 없음

3) 발주자는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입찰공고 등을 통해 사전 안내하는 등 입찰 참가자가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다 대상액 산정

대상액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 공사내역의 구분 여부에 따라 대상액을 산정하여야 함

- **공사내역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 : 재료비(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포함한 금액) + 직접노무비
- **공사내역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 : 총공사금액(부가가치세 포함) × 70%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시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은 공사에 있어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보는 것은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이 통상적으로 총공사금액의 70% 정도에 해당하는 데 따른 것임

【고시 제2조제1항제2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이하 "대상액"이라 한다)이란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고시 제4조제1항제3호】 대상액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 제4조제1항의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계획상 책정된 총공사금액의 1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상액으로 하고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상

1) 공사내역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

"대상액"은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포함한 금액)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임

※ 관급자재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 및 기구 등을 발주자가 직접 제공한 것이라면 대상액에 포함됨

※ 완제품 : 물품구매 및 설치공사의 물품(터빈발전기 및 고압급수가열기), 산업용 보일러 등과 같이 완성된 일체의 형태로 현장에 납품, 구매 또는 지급되는 자재 등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3조(건설공사에 대한 자재의 관급)】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공사 발주 시 다른 공사부분과 하자책임 구분이 쉽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직접 공급할 수 있다.

1. 자재의 품질, 수급상황, 공사규모 및 공사현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2.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정하거나 지정하는 신기술 인증제품인 경우

2) 공사내역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

"대상액"은 총공사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임

※ 참고 : 총공사금액

① 재료비(발주자가 따로 재료를 제공하거나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또는 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에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포함한 금액),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으로 구성

② 도급계약서상의 부가된 공사의 시공과 관련된 제반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

③ 제조공장에서 제작·구매한 물품, 재료비에 포함된 장비구입비 등은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비로 보아 당해 금액은 총공사금액에 포함

④ 평당 단가계약공사의 경우 당해 공사와 직접관련이 없는 이주비, 설계비, 감리비, 대지비, 분양계획 수립 및 운영비, 광고비, 민원비용, 입주비용, 별도 발주 모델하우스 건립 비용 등은 총공사금액에서 제외

라 공사종류의 적용

- **'24.7.1. 이후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 : 건축공사, 토목공사, 중건설공사, 특수건설공사 중 해당되는 공사에 대한 비율 적용**
- **'24.7.1. 이전 계약 체결된 공사 :** 일반건설공사(갑), 일반건설공사(을), 중건설공사, 철도·궤도신설공사, 특수및기타건설공사 **중 해당되는 공사에 대한 비율 적용**

공사종류는 계약체결 당시의 고시 별표5 「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를 참조하여 적용함. 다만, 하나의 사업장 내에 건설공사 종류가 둘 이상인 경우(분리 발주한 경우는 제외)에는 각 단위 공사별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 최종 공작물의 완성을 위한 전체공사 중에서 공사금액이 가장 큰 공사종류를 적용함

【고시 제4조제4항】 별표 1의 공사의 종류는 별표 5의 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에 따른다. 다만, 하나의 사업장 내에 건설공사 종류가 둘 이상인 경우(분리발주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공사금액이 가장 큰 공사종류를 적용한다.

1) 건축공사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나'목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및 이와 함께 부대하여 현장 내에서 행하는 공사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전문공사로서 건축물과 관련하여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적·장소적으로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

2) 토목공사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가'목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 '라'목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제거·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저장·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 및 이와 함께 부대하여 현장 내에서 행하는 공사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전문공사로서 같은 표 제1호 건축공사 외의 시설물과 관련하여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적·장소적으로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

3) 중건설공사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 되는 공사 중 다음과 같은 공사 및 이와 함께 부대하여 현장 내에서 행하는 공사

① 고제방 댐 공사 등
댐 신설공사, 제방신설공사와 관련한 제반시설공사

② 화력, 수력, 원자력, 열병합 발전시설 등 설치공사
화력, 수력, 원자력, 열병합 발전시설과 관련된 신설공사 및 제반 시설공사

③ 터널신설공사 등
도로, 철도, 지하철 공사로서 터널, 교량, 토공사 등이 포함된 복합시설물로 구성된 공사에 있어 터널 공사비 비중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공사

4) 특수건설공사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마'목 종합적인 계획 · 관리 · 조정에 따라 수목원 · 공원 · 녹지 · 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 · 개량하는 공사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 3)에서 구분한 조경공사(조경공사업, 조경식재 · 시설물공시업)에 해당하는 공사와 아래 각항에 따른 건설공사 중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적 · 장소적으로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

①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

②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

③ 「소방공사업법」에 의한 공사

④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

※ 특수건설공사는 "다른공사와 분리 발주되어 시간 · 장소적으로 독립되어 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다른 공사와 동일한 장소에서 병행하여 진행되는 경우에는 해당공사 요율을 적용해야 함에 유의

※ 참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제7조 관련)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및 업무내용

건설업종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가. 토목공사업	종합적인 계획 ·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 개량하는 공사	도로 · 항만 · 교량 · 철도 · 지하철 · 공항 · 관개수로 · 발전(전기공사는 제외한다) · 댐 · 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 · 매립공사 등
나. 건축공사업	종합적인 계획 ·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다.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라. 산업 · 환경설비 공사업	종합적인 계획 ·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 · 제거 · 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 ·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 · 저장 · 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	제철 · 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 공사, 환경시설공사(소각장, 수처리설비, 환경오염방지시설, 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중수도, 하 · 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의 공사를 말한다), 발전소설비공사 등
마. 조경공사업	종합적인 계획 · 관리 · 조정에 따라 수목원 · 공원 · 녹지 · 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 · 개량하는 공사	수목원 · 공원 · 숲 · 생태공원 · 정원 등의 조성공사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건설업종	업무분야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가. 지반 조성 · 포장공사업	1) 토공사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굴착 · 성토(흙쌓기) · 절토(흙깎기) · 흙막이공사 · 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 · 선별 · 성토공사 등
	2) 포장공사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 활주로 · 광장 · 단지 ·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층 공사를 포함한다)와 그 유지 · 수선공사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공사, 시멘트콘크리트포장공사, 유색 · 투수콘크리트포장공사, 소파(小破)보수 및 덧씌우기 포장공사, 과속방지턱설치공사 등

	3) 보링 · 그라우팅 · 파일공사	가)보링 · 그라우팅공사: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처리하는 공사	보링[boring: 시추(試錐)하는 것을 말한다]공사, 그라우팅[grouting: 균열이나 공동(空洞) 등의 틈새에 그라우트(주입액)를 주입하거나 충전(充塡)하는 것을 말한다]공사, 착정공사, 지열공착정공사 등
		나)파일공사: 항타(杭打)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하는 공사	샌드파일공사, 말뚝공사 등
나. 실내 건축 공사업	실내건축공사	가)실내건축공사: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 ·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실내건축공사(도장공사 또는 석공사만으로 시공되는 공사는 제외한다), 실내공간의 구조체 제작 및 마감공사, 그 밖에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등
		나)목재창호 · 목재구조물공사: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 · 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목재창호공사, 목재 등을 사용한 칸막이공사, 목재구조물 · 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등
다. 금속 · 창호 · 지붕 · 건축물 조립 공사업	1) 금속구조물 · 창호 · 온실 공사	가)창호공사: 각종 금속재 · 합성수지 · 유리 등으로 된 창 또는 문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창호공사, 발코니창호공사, 외벽유리공사, 커튼월창호공사, 배연창 · 방화문설치공사, 자동문 · 회전문 설치공사, 승강장스크린도어설치공사, 유리공사 등
		나)금속구조물공사	
		(1)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천장 · 벽체 · 칸막이 등을 설치하는 공사	천장 · 건식벽체 · 강재벽체 · 경량칸막이 등의 공사
		(2)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도로, 교량, 터널 및 그 밖의 장소에 안전 · 경계 · 방호 · 방음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공사	가드레일 · 가드케이블 · 표지판 · 방호울타리 · 펜스 · 낙석방지망 · 낙석방지책 · 방음벽 · 방음터널 · 교량안전점검시설 · 버스승강대 · 도로교통안전시설물 등의 공사
		(3)각종 금속류로 구조물 및 공작물을 축조하거나 설치하는 공사	굴뚝 · 탱크 · 수문설치 · 셔터설치 · 옥외광고탑 · 격납고문 · 사다리 · 철재프레임 · 난간 · 계단 등의 공사
		다) 온실설치공사: 농업 · 임업 · 원예용 등 온실의 설치공사	농업 · 임업 · 원예용 등 온실설치공사와 부대설비공사

	2) 지붕판금 · 건축물조립공사	가)지붕 · 판금공사: 기와 · 슬레이트 · 금속판 · 아스팔트 싱글(asphalt shingle) 등으로 지붕을 설치하는 공사, 건축물 등에 판금을 설치하는 공사	지붕공사, 지붕단열공사, 지붕장식공사, 판금공사, 폴리염화비닐(PVC)가공 부착공사, 빗물받이 및 홈통공사 등
		나)건축물조립공사: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과 부품 등으로 건축물의 내벽 · 외벽 · 바닥 등을 조립하는 공사	샌드위치판넬 · ALC판넬 · PC판넬 · 세라믹판넬 · 알루미늄복합판넬 · 사이딩판넬 · 클린복합판넬 · 시멘트보드판넬 · 약세스바닥판넬 등의 공사
라. 도장 · 습식 · 방수 · 석공사업	1) 도장공사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 · 롤러 · 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	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공사, 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 전천후경기장바탕도장공사, 부식방지공사 등
	2) 습식 · 방수공사	가)미장공사: 구조물 등에 모르타르 · 플러스터 · 회반죽 · 흙 등을 바르거나 내 · 외벽 및 바닥 등에 성형단열재 · 경량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하여 마감하는 공사	일반미장공사, 미장모르타르공사, 합성수지모르타르공사, 미장뿜칠공사, 다듬기공사, 줄눈공사, 단열재 접착 및 뿜칠공사, 견출 및 코킹(caulking)공사, 내화충전공사 등
		나)타일공사: 구조물 등에 점토 · 고령토 · 합성수지 등을 주된 원료로 제조된 타일을 붙이는 공사	내 · 외장 타일 붙임공사, 모자이크, 테라코타타일공사 및 합성수지계타일공사 등
		다)방수공사: 아스팔트 · 실링재 · 에폭시 · 시멘트모르타르 · 합성수지 등을 사용하여 토목 · 건축구조물, 산업설비 및 폐기물매립시설 등에 방수 · 방습 · 누수방지 등을 하는 공사	방수공사, 에폭시공사, 방습공사, 도막(도료 도포막)공사, 누수방지공사 등
		라)조적공사: 구조물의 벽체나 기초 등을 시멘트블록 · 벽돌 등의 재료를 각각 모르타르 등의 교착제로 부착시키거나 장치하여 쌓거나 축조하는 공사	블록쌓기공사, 벽돌쌓기공사, 벽돌붙임공사 등
	3) 석공사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	건물외벽 등 석재공사, 바닥 · 벽체 등의 돌붙임공사, 인도 · 광장 등 돌포장공사, 석축 등 돌쌓기공사 등

마.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1) 조경식재공사	조경수목·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공사	조경수목·잔디·지피식물·초화류 등의 식재공사 및 이를 위한 토양개량공사, 종자뿜어붙이기공사 등 특수식재공사 및 유지·관리공사, 조경식물의 수세(樹勢) 회복공사 및 유지·관리공사 등
	2) 조경시설물 설치공사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인조목·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퍼걸러(pergola)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	조경석·인조목·인조암 등의 설치공사, 야외의자·퍼걸러·놀이기구·운동기구·분수대·벽천(壁泉) 등의 설치공사, 인조잔디공사 등
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근·콘크리트로 토목·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각종 특수콘크리트공사,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PSC)구조물공사, 포장장비로 시공하지 않는 2차로 미만의 농로·기계화 경작로·마을안길 등을 시멘트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 등
사.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구조물 해체·비계공사	가)구조물해체공사: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해체공사 등
		나)비계공사: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	일반비계공사, 발판가설공사, 빔운반거상공사, 특수중량물설치공사, 그 밖에 높은 장소에서 시행하는 공사 등
아.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상하수도 설비공사	가)상수도설비공사: 상수도, 농·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공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	취수·정수·송배수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상수도, 농·공업용수도 등의 용수관 설치공사(옥내급배수설비공사는 제외한다), 관세척 및 갱생공사, 각종 변류이형관설치공사, 옥외스프링클러설치공사 등
		나)하수도설비공사: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	하수 등의 처리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하수·우수관 부설(옥내급배수설비공사는 제외한다)및 세척·갱생공사 등
자. 철도·궤도공사업	철도·궤도 공사	철도·궤도를 설치하는 공사	궤광공사, 레일공사, 레일용접공사, 분기부공사, 받침목공사, 도상공사, 궤도임시받침공사, 선로차단공사, 아이빔(I-beam) 및 거더(girder)설치공사, 건널목보판공사 등

차. 철강 구조물 공사업	철강구조물 공사	가)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제작 · 조립 · 설치하는 공사	교량 등의 철구조물의 제작 · 조립 · 설치공사
		나)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 · 설치하는 공사	건축물의 철구조물조립 · 설치공사
		다)대형 댐의 수문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 · 설치하는 공사	대형 댐 수문설치공사 등
		라) 그 밖의 각종 철구조물공사	인도전용강재육교설치공사, 철탑공사, 갑문 및 댐의 수문설치공사 등
카. 수중 · 준설 공사업	1) 수중공사	수중에서 인원 · 장비 등으로 수중 ·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	수중암석파쇄공사 · 수중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 계선부표 및 수중작업이 요구되는 항로표지 설치공사, 수중구조물방식공사, 해저케이블공사, 투석공사 등
	2) 준설공사	하천 · 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	항만 · 항로 · 운하 및 하천의 준설공사 등
타. 승강기 · 삭도 공사업	1) 승강기 설치공사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 · 해체 · 교체 및 성능개선공사	승객 · 화물 · 건설공사용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설치공사, 무빙워크설치공사, 기계식주차설비공사 등
	2) 삭도설치 공사	삭도를 신설 · 개설 · 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	케이블카 · 리프트의 설치공사 등
파. 기계설비 · 가스 공사업	1) 기계설비 공사	건축물 · 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 위생 · 냉난방 · 공기조화 · 기계기구 · 배관설비 등을 조립 · 설치하는 공사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 · 환기 · 공기조화 · 냉난방 · 급탕 · 주방 · 위생 · 방음 · 방진 · 전자파차단설비공사, 플랜트 안의 배관 · 기계기구설치공사, 기계설비를 자동제어하기 위한 제어기기 · 지능형제어시스템 · 자동원격검침설비 등의 자동제어공사, 시스템에어컨(GHP · EHP)공사, 지열냉 · 난방 기기설치 및 배관공사, 보온 · 보냉 등 열절연공사, 옥내 급배수관개량 · 세척공사, 무대기계장치공사, 자동창고설비공사, 냉동냉장설비공사, 집진기공사, 철도기계신호공사, 건널목차단기공사 등

	2) 가스시설 공사(제1종)	가)가스시설공사(제2종)의 업무 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나)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다)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집단공급시설·저장소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라)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마)저장능력 500kg 이상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바)고압가스배관의 설치·변경공사	
하. 가스·난방 공사업	1) 가스시설 공사(제2종)	가)가스시설공사(제3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나)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다)도시가스의 공급관과 내관이 분리되는 부분 이후의 보수공사 라)배관에 고정설치되는 가스용품의 설치공사 및 그 부대공사 마)저장능력 500kg 미만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바)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의 설치·변경공사	
	2) 가스시설 공사(제3종)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미만인 다음의 공사 가)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나)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로서 5만kcal/h이하의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다)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변경공사	

	3) 난방공사 (제1종)	가)「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7조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강철재보일러 · 주철재보일러·온수보일러 · 구멍탄용 온수보일러 · 축열식 전기보일러·가정용 화목보일러 · 태양열집열기 · 1종압력용기 · 2종압력용기의 설치와 이에 부대되는 배관 · 세관공사 나)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4) 난방공사 (제2종)	가)「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7조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태양열집열기 · 용량 5만 kcal/h 이하의 온수보일러 · 구멍탄용 온수보일러 · 가정용 화목보일러의 설치 및 이에 부대되는 배관 · 세관공사 나)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5) 난방공사 (제3종)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요업요로 · 금속요로의 설치공사	

※ '24.6.30. 까지 적용되는 공사종류 분류 예시

1) 일반건설공사(갑)

중건설공사, 철도 또는 궤도건설공사, 기계장치공사 이외의 건축공사, 도로신설 등 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당해 공사를 현장 내에서 행하는 공사

※ 건축건설공사, 도로건설공사, 기타 건설공사

2) 일반건설공사(을)

각종 기계 · 기구장치 등을 설치하는 공사

3) 중건설공사

고제방(댐), 수력발전시설, 터널 등을 신설하는 공사

4) 철도 또는 궤도 등을 신설하는 공사

철도 또는 궤도 신설에 관한 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행하는 공사로 기설노반 또는 구조물에서 행하는 철도 · 궤도 신설공사에 한정함

※ 이 공사에서 신설이란 새로운 철도 · 궤도의 건설, 단선을 복선으로 하는 경우 등 새로운 형태로 시공되는 것을 말함

5) 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

타 공사와 분리 발주되어 시간 · 장소적으로 독립하여 행하는 다음의 공사(다른 공사와 병행하여 행하는 경우에는 일반건설공사(갑)으로 분류)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준설공사, 조경공사, 택지조성공사(경지정리공사 포함), 포장공사

※ 택지조성을 목적으로 오수시설, 전기, 상 · 하수도, 도로 등 일반적인 택지조성공사 형태로 시행되는 공유수면 매립공사, 도로신설, 상 · 하수도, 옹벽 및 하수도박스 등의 구조물공사, 공원 조성공사 및 포장 등을 복합적으로 행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 기반시설 공사 등은 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에 해당함

나) 「전기공사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 「전기공사업법」 제11조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에 따라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 등 다른 공사와 분리 발주토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전기 · 통신공사가 분리 발주되어 계약자 및 착공시기를 달리한다 하더라도 다른 건축 · 토목공사와 병행하여 진행된다면 일반건설공사(갑) 요율을 적용하여야 함

※ 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는 "다른공사와 분리 발주되어 시간 · 장소적으로 독립되어 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다른 건축공사와 동일한 장소에서 병행하여 진행되는 경우에는 일반건설공사(갑)으로 분류함에 유의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방법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대상액을 산정하고 고시 별표1의 「공사종류 및 규모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표」에 따라 해당 공사종류에 비율을 곱하여 계상함

※ 별표1에 따른 비율은 법정 최소금액을 규정한 것으로 발주자가 해당 건설공사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최소기준 이상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님

【고시 제4조】 ① 발주자가 도급계약 체결을 위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하거나, 자기공사자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이상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일부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납품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을 대상액에 포함하여 산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을 대상액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에 해당하는 값을 비교하여 그 중 작은 값 이상의 금액으로 계상한다.

1. 대상액이 5억 원 미만 또는 50억 원 이상인 경우: 대상액에 별표 1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
2. 대상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대상액에 별표 1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에 기초액을 합한 금액
3. 대상액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제4조제1항의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 계획상 책정된 총공사금액의 1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상액으로 하고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상

가) 대상액 산정

1) **공사내역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 :** 재료비(직접재료비 + 간접재료비 + 발주자 제공 재료비) + 직접노무비

2) **공사내역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총 공사금액 × 70%

【고시 제2조제1항제2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이하 "대상액"이라 한다)이란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고시 제4조제1항제3호】 대상액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제4조제1항의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계획상 책정된 총공사금액의 1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상액으로 하고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상

나) 비율 적용(고시 별표1 : 공사종류 및 규모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표)

1) 2025.1.1.부터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

구분 / 공사종류	대상액 5억원 미만인 경우 적용 비율(%)	대상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대상액 50억원 이상인 경우 적용 비율(%)	영 별표5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공사의 적용비율(%)
		적용비율(%)	기초액		
건 축 공 사	3.11%	2.28%	4,325,000원	2.37%	2.64%
토 목 공 사	3.15%	2.53%	3,300,000원	2.60%	2.73%
중 건 설 공 사	3.64%	3.05%	2,975,000원	3.11%	3.39%
특수건설공사	2.07%	1.59%	2,450,000원	1.64%	1.78%

2) 2024.7.1.부터 ~ 2024.12.31.까지 새로이 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

구분 / 공사종류	대상액 5억원 미만인 경우 적용 비율(%)	대상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대상액 50억원 이상인 경우 적용 비율(%)	영 별표5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공사의 적용비율(%)
		적용비율 (%)	기초액		
건 축 공 사	2.93%	1.86%	5,349,000원	1.97%	2.15%
토 목 공 사	3.09%	1.99%	5,499,000원	2.10%	2.29%
중 건 설 공 사	3.43%	2.35%	5,400,000원	2.44%	2.66%
특수건설공사	1.85%	1.20%	3,250,000원	1.27%	1.38%

3) 2024.6.30까지 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

구분 / 공사종류	대상액 5억원 미만인 경우 적용 비율(%)	대상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대상액 50억원 이상인 경우 적용 비율(%)	영 별표5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공사의 적용비율(%)
		적용비율 (%)	기초액		
일반건설공사(갑)	2.93%	1.86%	5,349,000원	1.97%	2.15%
일반건설공사(을)	3.09%	1.99%	5,499,000원	2.10%	2.29%
중 건 설 공 사	3.43%	2.35%	5,400,000원	2.44%	2.66%
철도 · 궤도신설공사	2.45%	1.57%	4,411,000원	1.66%	1.81%
특수및기타건설공사	1.85%	1.20%	3,250,000원	1.27%	1.38%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산

1) 대상액이 5억미만 또는 50억원 이상 공사

■ **공사내역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 : ①와 ②를 비교하여 작은 값 이상의 금액으로 계상**

① (직접재료비+간접재료비+직접노무비+발주자제공재료비+완제품가액) ×비율

② (직접재료비+간접재료비+직접노무비)×비율×1.2

■ **공사내역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 : ①와 ②를 비교하여 작은 값 이상의 금액으로 계상**

① {총공사금액(부가가치세 포함)×70%} ×비율

② [{총공사금액(부가가치세 포함)×70%}-(발주자제공재료비+완제품가액)] ×비율×1.2

2) 대상액이 5억이상 50억원 미만 공사

■ **공사내역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 : ①와 ②를 비교하여 작은 값 이상의 금액으로 계상**

① (직접재료비+간접재료비+직접노무비+발주자제공재료비+완제품가액) ×비율+기초액

② {(직접재료비+간접재료비+직접노무비)×비율+기초액}×1.2

■ **공사내역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 : ①와 ②를 비교하여 작은 값 이상의 금액으로 계상**

① {총공사금액(부가가치세 포함)×70%} ×비율+기초액

② [{총공사금액(부가가치세 포함)×70%-(발주자제공재료비+완제품가액)} ×비율 +기초액]×1.2

■ **부가가치세가 면세인 공사의 경우**

총공사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도급계약서상에 명기된 총공사금액에 따라 계상하여야 함

※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 건설공사의 경우 도급계약서상에 총공사금액이 도급금액(부가세 별도)으로 명기되어 있다면 "도급금액 + 도급금액의 10%"의 70%를 대상액으로 보고 계상하여야 함

■ **평당 단가계약공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 공사금액(당해 공사와 직접관련이 없는 이주비, 설계비, 감리비, 대지비, 민원비용, 광고비, 입주비용 등은 제외)의 70%를 기준으로 계상함

■ **연차공사의 경우**

연차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차수별 공사가 아닌 전체공사의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계상함

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조정계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설계변경, 물가변동, 관급자재의 증감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계상하여야 하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금액이 800억 원(토목 1,000억 원) 이상으로 증액된 경우에는 증액된 대상액에 기준 요율을 적용하여 새로 계상하여야 함

【고시 제4조】 ⑤ 발주자 또는 자기공사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별표 1의3에 따라 지체 없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이 800억 원 이상으로 증액된 경우에는 증액된 대상액을 기준으로 제1항에 따라 재계상한다.

※【별표 1의3】 설계변경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 · 계상 방법

1. 설계변경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설계변경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설계변경 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설계변경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증감액
2. 제1호의 계산식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증감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설계변경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증감액 = 설계변경 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대상액의 증감비율
3. 제2호의 계산식에서 대상액의 증감비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대상액은 예정가격 작성 시의 대상액이 아닌 설계변경 전 · 후의 도급계약서상의 대상액을 말한다.
   - 대상액의 증감 비율 = [(설계변경 후 대상액 - 설계변경 전 대상액) / 설계변경 전 대상액] × 100%

Ⅲ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현장수요 반영】 건설현장의 실제 수요를 최대한 반영하여 보다 유연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현장 여건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 노·사발굴 품목, 스마트 안전장비 총액 한도 확대, 온열·한랭 질환 예방 품목, 냉·난방기 임대비 등

가 사용 원칙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함이 원칙이며, 위험성평가를 통해 발굴한 품목, 스마트 안전시설 · 장비, 온열·한랭 질환 예방 품목 등 일부 항목도 사용 가능

나 사용 항목

1)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의 임금 등

가) 법 제17조제3항 및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안전 또는 보건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 또는 보건관리자의 임금과 출장비 전액

나) 안전 또는 보건관리 업무를 전담하지 않는 안전 또는 보건관리자의 임금과 출장비의 각각 2분의 1에 해당하는 비용

※ 안전 · 보건 관리자의 임금 · 출장비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신고 이후 지급이 가능하며, 해당 현장에서 발생한 퇴직급여도 사용 가능

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산재예방 업무만을 수행하는 작업지휘자, 유도자, 신호자, 화재감사자 등의 임금 전액

※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있는 현장에서는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어야 지급이 가능하나,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현장의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유무와 상관없이 사용 가능

라)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조·반장 등 관리감독자의 직위에 있는 자가 영 제15조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업무수당(임금의 10분의 1 이내)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 참고 :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란?

△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으로(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

-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며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취업규칙·급여규정·근로계약·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1990.12.7. 선고, 90다카19647 판결 등)

△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가족수당 등의 금품은 임금에 포함되나,

- ① 출장비, 판공비, 장비·근무복 구입비 등 **실비변상적 금품,** ② **일률적으로 지급·제공되지 않은** 사택, 급식, 학자금 보조금 등 **복리후생적 물품·시설 또는 금품,** ③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지 않아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없고 비정기적으로 지급한** 축하금, 격려금, 선물비 등 **은혜적·호의적 금품** 등은 임금에 미해당

2) 안전시설비 등

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안전대 부착설비, 방호장치(기계·기구와 방호장치가 일체로 제작된 경우 방호장치 부분의 가액에 한함) 등 안전시설의 구입·임대 및 설치 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 안전시설 해체의 경우 설치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행위로 보아 사용 허용

※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낙하·비래물 보호용 시설, 중장비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및 펜스 등 교통안전시설물, 위생 및 긴급 피난용 시설, 철근공사 시 직접적인 공사수행을 위해 사용하는 작업발판 또는 통로로 사용되지 않고, 근로자의 전도방지 또는 전도 시, 찔림 등의 재해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실족방지망 등

나)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조제5호에 따른 "스마트안전장비 지원사업"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3에 따른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 비용('25.1.1~ : 70%, '26.1.1~ : 100%)에 해당하는 비용. 다만, 제4조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2을 초과할 수 없다.

※ 2025.1.1.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이 400만 원인 공사현장에서 스마트헬멧(구매가 140만 원, 통신비 별도) 구입 시

○ 구입·임대비의 70% 비용 : 140만 원 × 70% = 98만 원
○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2 : 80만 원

☞ 스마트 안전장비 품목으로 사용 가능한 안전보건관리비 : 80만 원

다) 용접 작업 등 화재 위험작업 시 사용하는 소화기의 구입·임대비용

3) 보호구 등

가) 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3호 및 제7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호구의 구입·수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나) 근로자가 가목에 따른 보호구를 직접 구매·사용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보전하는 비용

다) 고시 제7조제1항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자 등의 업무용 피복, 기기 등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

※ 안전·보건관리자, 작업지휘자, 유도자, 신호수의 피복 및 사무기기에 소요되는 비용

라)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안전보건 점검 등을 목적으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차량의 유류비·수리비·보험료

4) 안전보건 진단비

가) 법 제42조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

나) 법 제47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다) 법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 측정에 소요되는 비용

라) 그 밖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법에서 지정한 전문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진단, 검사, 지도 등에 소요되는 비용

5) 안전보건교육비 등

가) 법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의무교육이나 이에 준하는 교육을 위한 건설공사 현장의 교육 장소 설치·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교육생에게 지급하는 교육비 등 사용 가능. 교육장 사용 목적으로 임대하는 컨테이너 임대 비용은 사용 가능하나, 컨테이너 구매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 불가

나) 가) 이외 산업재해 예방이 주된 목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대상자 등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서, 정기간행물을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 정기간행물의 경우 안전보건 등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전문적, 기술적 정보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간행물에 한하여 인정

마)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기원제 등 산업재해 예방을 기원하는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단, 행사의 방법, 소요된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적합한 행사에 한한다.

바) 건설공사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제보하거나 제도개선 방안 등을 제안한 근로자를 격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그에 준하여 요구되는 근로자의 각종 건강장해 예방에 필요한 비용

※ 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요구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품목 및 작업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등

나) 중대재해 목격으로 발생한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구입비 및 감염병 병원체 검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라) 법 제128조의2 등에 따른 휴게시설을 갖춘 경우 온도, 조명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마)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심폐소생을 위해 사용되는 자동심장충격기(AED)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바) 온열·한랭질환으로부터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임시 휴게시설 설치·해체·임대 비용 및 냉·난방기기의 임대 비용

【혹서기 사용가능 품목(예시)】

관련 규정	사용가능품목	비고
가. 법·영·규칙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필요한 비용	개인 단위로 지급하는 생수, 식용소금, 식염포도당, 분말 형태의 이온음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1조 적용
바. 온열·한랭질환으로부터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임시 휴게시설 설치·해체·임대비용 및 냉·난방기기의 임대비용	천막, 텐트 등 간이 휴게 시설(구매·설치 및 해체비용), 컨테이너(임대비용)	

○ 사용기간 : 현장 기후 여건에 따라 적절한 시기

○ 그 외 냉장고, 냉동고, 제빙기 임대비용, 아이스조끼, 쿨토시, 간이휴게실에 비치하는 의자 등 품목은 고시 제7조제1항제9호에 따라 위험성평가 등을 거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에서 결정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

7) 법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대한 대가로 제2조제1항제5호의 자기공사자가 지급하는 비용

※ '22년 8월 18일 부터 기술지도 계약의무 주체가 기존 건설공사도급인에서 발주자로 변경됨에 따라 건설공사 도급인의 경우 '22년 8월 17일 이전 계약분에 한하여 사용 가능

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사업에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본사 전담조직에 소속된 근로자의 임금 및 업무수행 출장비 전액. 다만, 제4조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직전년도 공시된 시공능력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는 사용 불가

9)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호에 따라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 제24조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 제75조의 노사협의체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비용(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가 없는 현장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법 제6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결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비용을 말한다). 다만, 제4조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 고시 제7조 사용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해당 현장 특성상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하여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품목으로 판단하여 위험성평가 등을 거쳐 노사협의체 등을 통해 발굴한 품목일 경우 사용이 가능

※ 예시 : 혹서기 건설공사 현장 근로자에게 아이스조끼를 제공하려는 경우

①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시 아이스조끼 필요에 대한 위험요인 분석

② 법 제75조 노사협의체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아이스조끼 구입 · 제공 결정

☞ 해당 증빙자료 등 작성 · 보존 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다 사용불가 내역

1) 사용기준에 부합하더라도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불가

가)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제3항 중 각 호(단, 제14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제외)에 해당되는 다음 비용

※ ①전력비, 수도광열비, ②운반비, ③기계경비, ④특허권사용료, ⑤기술료, ⑥연구개발비, ⑦품질관리비, ⑧가설비, ⑨지급임차료, ⑩보험료, ⑪복리후생비, ⑫보관비, ⑬외주가공비, ⑭소모품비, ⑮여비 · 교통비 · 통신비, ⑯세금, 공과금, ⑰폐기물처리비, ⑱도서인쇄비, ⑲지급수수료, ⑳환경보전비, ㉑보상비, ㉒안전관리비, ㉓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㉔관급자재 관리비, ㉕법정부담금, ㉖기타 법정경비

※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예규 제785호, 2025. 5. 1.)

제19조(경비) ① 경비는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원가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된다.

② 경비는 해당 계약목적물 시공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제34조에 의한 원가계산 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산정하여야 한다.

③ 경비의 세비목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전력비, 수도광열비는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해당 비용을 말한다.
2. 운반비는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은 운반비로서 원재료, 반재료 또는

기계기구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등을 말한다.

3. 기계경비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상의 건설기계의 경비산정기준에 의한 비용을 말한다.
4. 특허권사용료는 타인 소유의 특허권을 사용한 경우에 지급되는 사용료로서 그 사용비례에 따라 계산한다.
5. 기술료는 해당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노하우(Know-how) 및 동 부대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하며 「법인세법」상의 시험연구비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여 사업초년도부터 이연상각하되 그 사용비례를 기준으로 배분계산한다.
6. 연구개발비는 해당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 및 연구비로서 시험 및 시범제작에 소요된 비용 또는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 용역비와 법령에 의한 기술개발촉진비 및 직업훈련비를 말하며 「법인세법」상의 시험연구비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연상각하되 그 사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계산한다. 다만, 연구개발비중 장래 계속 시공으로서의 연결이 불확실하여 미래 수익의 증가와 관련이 없는 비용은 특별상각할 수 있다.
7. 품질관리비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품질시험 인건비를 포함한다)을 말하며, 간접노무비에 계상(시험관리인)되는 것은 제외한다.
8. 가설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현장사무소, 창고, 식당, 숙사, 화장실 등 동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노무비, 재료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9. 지급임차료는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계기구(건설기계를 제외한다)의 사용료를 말한다.
10. 보험료는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 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고, 동 보험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며, 재료비에 계상되는 보험료는 제외한다. 다만 공사손해보험료는 제2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별도로 계상된다.
11. 복리후생비는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종사하는 노무자 · 종업원 · 현장사무소직원 등의 의료위생약품대, 공상치료비, 지급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등 작업조건 유지에 직접 관련되는 복리후생비를 말한다.
12. 보관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소요되는 재료, 기자재 등의 창고사용료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만을 계상하여야 하며 이중에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13. 외주가공비는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을 말하며 외주가공품의 가치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15. 소모품비는 작업현장에서 발생되는 문방구, 장부대등 소모용품 구입비용을 말하며, 보조재료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16. 여비 · 교통비 · 통신비는 시공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 및 차량유지비와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17. 세금과 공과는 시공현장에서 해당공사와 직접 관련되어 부담하여야 할 재산세, 차량세, 사업소세 등의 세금 및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18. 폐기물처리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등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의거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19. 도서인쇄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참고서적구입비, 각종 인쇄비, 사진제작비(VTR제작비를 포함한다) 및 공사시공기록책자 제작비등을 말한다.
20. 지급수수료는 시행령 제52조제1항 단서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등 법령으로서 지급이 의무화된 수수료를 말한다. 이경우 보증서 발급수수료는 보증서 발급기관이 최고 등급업체에 대해 적용하는 보증요율중 최저요율을 적용하여 계상한다.
21. 환경보전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제반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위한 것으로서, 관련법령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비용을 말한다.
22. 보상비는 해당 공사로 인해 공사현장에 인접한 도로 하천 · 기타 재산에 훼손을 가하거나 지장물을 철거함에 따라 발생하는 보상 · 보수비를 말한다. 다만, 해당공사를 위한 용지보상비는 제외한다.
23.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24.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4호 및 제18조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산정하여 계상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제외한다.

25. 관급자재 관리비는 공사현장에서 사용될 관급자재에 대한 보관 및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26. 법정부담금은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공사와 직접 관련하여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을 말한다.
27. 기타 법정경비는 위에서 열거한 이외의 것으로서 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경비를 말한다.

Ⅳ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확인

가 개 요

발주자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목적 외 사용 등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사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용내역 등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음

나 주요 내용

1)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 6개월 이내에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 시 확인을 받아야 함

2) 발주자, 감리자 및 근로감독관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도급인 등은 이에 따라야 함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확인방법 및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자료 등을 제시 요구할 수 있음
다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확인을 이유로 필요한 사용시점을 늦추게 하거나 적법한 사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됨

【고시 제9조(확인)】 ①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6개월 이내에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 시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 감리자 및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관계 근로감독관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을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도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발주자 또는 감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확인 시 기술지도 계약 체결, 기술지도 실시 및 개선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V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

가 증빙 방법

1) 사용증빙은 당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법하게 사용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면 될 것임. 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는 매월 정기적으로, 항목별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하여야 함(공사금액 4천만 원 미만은 작성 제외)

【시행규칙 제89조제2항】 ② 건설공사도급인은 법 제72조제3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는 해당 건설공사의 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때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사용명세서를 작성하고, 건설공사 종료 후 1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 사용항목에 따라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품의서, 송장 등 입증이 가능한 자료를 구비 · 첨부하면 됨

2) 본사 근로자 임금 등의 경우 공사 현장에서 본사 인건비 사용내역을 작성 · 입증할 필요는 없고, 임금 등을 사용한 본사에서 사용내역서를 작성 · 구비하고 임금 등 지출 근거를 첨부 · 보존하면 됨

※ 본사 시공순위, 본사 안전보건조직 구성 체계 및 누적사용액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분의 1 이하임 등을 증명

나 정산 방법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사용 및 정산은 계약단위 공사별로 이루어져야 함

※ 동일한 발주자로부터 OO공사와 △△공사를 도급받아 동일한 부지 내에서 동일한 공사 조직체계 및 관리하에서 공사를 수행하거나, 또는 서로 다른 발주자로부터 OO공사와 △△공사를 도급받아 서로 인접한 장소에서 동일한 공사조직체계 및 관리하에서 시공한다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공사별로 계상 · 사용 및 정산이 이루어져야 함

2)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차수별 금액이 아닌 총공사금액을 대상으로 계상하고 정산에 있어서도 해당 차수가 아닌 총공사기간에 대하여 정산함

3) 소급 정산 가능 여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법하게 지출한 것이라면 사용시점 이후라도 실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총공사기간 완료전까지는 소급하여 정산이 가능함

4) 계상금액을 초과 사용한 경우

당해 공사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수급인 간에 협의·처리하여야 함

5)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기준(기재부 계약예규)상 경비항목의 세비목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의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정산하여야 함

나)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은 공사에 있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토록 하고 있으나 정산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정산하여야 함

다) 이는 단지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는 공사의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이 통상적으로 총공사금액의 70% 정도에 해당하는 데 따른 것이므로 어떤 경우든 동일한 방법(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정산함에 유의하여야 함

VI 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

가 감액 조정 등

1) 발주자는 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음

【고시 제8조(사용금액의 감액 · 반환 등)】 발주자는 도급인이 법 제72조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2) 현장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 수행기간 내에 적법하게 사용하였음에도 남은 금액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 협의하여 처리

나 초과 계상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법정 최소 요율로 정한 것이므로 초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감액 등에 대해서는 공사계약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

【고시 제4조(계상의무 및 기준)】 ① 발주자가 도급계약 체결을 위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하거나, 자기공사자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이상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Ⅶ 위반 시의 조치

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계상 또는 부족 계상의 경우

1) 전액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 계상하지 않은 금액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1,000만 원 초과 시 1,000만 원)

2) 50% 이상 100% 미만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가) 1차 위반 : 100만 원 과태료 부과

나) 2차 위반 : 300만 원 과태료 부과

다) 3차 위반 : 600만 원 과태료 부과

3) 50% 미만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가) 1차 위반 : 100만 원 과태료 부과

나) 2차 위반 : 200만 원 과태료 부과

다) 3차 위반 : 300만 원 과태료 부과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1) 과태료 부과기준

가) 목적 외 사용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 1,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나) 목적 외 사용금액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 : 목적 외 사용금액의 과태료 부과

2) 공동도급 시의 부과대상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분담시공회사(현장)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각 부과하고 공동이행방식의 경우는 공동사업주로서 주관사 및 비주관사(지분만 참여) 모두가 부과 대상임

※ 법적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상회하는 금액을 자체 실행예산으로 편성·집행하였을 경우 목적 외 사용금액이 있다 하더라도 목적 외 사용금액을 공제한 금액(적합하게 사용된 금액)이 법적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초과한다면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한 과태료부과 등 벌칙을 적용할 수 없고, 공제한 금액이 법적 산업안전보건관리비보다 부족하다면 부족한 금액분에 대해서만 목적 외 사용금액으로 보아 과태료 부과 등 벌칙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산안(건안) 68307-551, '97.8.4)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미작성 또는 미보존의 경우

1)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가) 1차 위반 : 100만 원 과태료 부과

나) 2차 위반 : 500만 원 과태료 부과

다) 3차 위반 : 1,000만 원 과태료 부과

2) 공사종료 후 1년간 사용내역서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가) 1차 위반 : 100만 원 과태료 부과

나) 2차 위반 : 200만 원 과태료 부과

다) 3차 위반 : 300만 원 과태료 부과

02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고시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정 1988. 02. 15	고시 제88 - 13호
개정 1989. 02. 10	고시 제89 - 04호
개정 1991. 07. 04	고시 제91 - 39호
개정 1991. 09. 27	고시 제91 - 57호
개정 1994. 10. 21	고시 제94 - 45호
개정 1995. 02. 23	고시 제95 - 06호
개정 1996. 10. 22	고시 제96 - 36호
개정 1997. 12. 23	고시 제97 - 42호
개정 1998. 12. 18	고시 제98 - 68호
개정 1999. 06. 03	고시 제99 - 11호
개정 2000. 05. 22	고시 제2000 - 17호
개정 2001. 02. 16	고시 제2001 - 22호
개정 2002. 07. 22	고시 제2002 - 15호
개정 2005. 03. 17	고시 제2005 - 06호
개정 2005. 12. 05	고시 제2005 - 32호
개정 2007. 02. 21	고시 제2007 - 04호
개정 2008. 10. 22	고시 제2008 - 67호
개정 2010. 08. 09	고시 제2010 - 10호
개정 2012. 02. 08	고시 제2012 - 23호
개정 2012. 11. 23	고시 제2012 -126호
개정 2013. 10. 14	고시 제2013 - 47호
개정 2014. 10. 22	고시 제2014 - 37호
개정 2017. 02. 07	고시 제2017 - 08호
개정 2018. 10. 05	고시 제2018 - 72호
개정 2018. 12. 31	고시 제2018 - 94호
개정 2019. 12. 13	고시 제2019 - 64호
개정 2020. 1. 3	고시 제2020 - 63호
개정 2022. 6. 2	고시 제2022 - 43호
개정 2023. 10. 5	고시 제2023 - 49호
개정 2024. 9. 19	고시 제2024 - 53호
개정 2025. 2. 12	**고시 제2025 - 11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사용되거나 해당 건설업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본사“라 한다)에 설치된 안전전담부서에서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이하 “대상액“이라 한다)이란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건설공사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건설공사발주자를 말한다.
4. “건설공사도급인”이란 발주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5. “자기공사자”란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6. “감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15호의 공사감리자
   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문화재감리원
   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3호의 감리원
   마.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의 감리원
   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10호의 감리원
   사.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라 감리 또는 공사감리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②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예산회계 및 건설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법 제2조제11호의 건설공사 중 총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단가계약에 의하여 행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제2장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

제4조(계상의무 및 기준) ① 발주자가 도급계약 체결을 위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하거나, 자기공사자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이상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일부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납품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을 대상액에 포함하여 산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을 대상액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에 해당하는 값을 비교하여 그 중 작은 값 이상의 금액으로 계상한다.

1. 대상액이 5억 원 미만 또는 50억 원 이상인 경우: 대상액에 별표 1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
2. 대상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대상액에 별표 1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에 기초액을 합한 금액
3. 대상액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제4조제1항의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 계획상 책정된 총공사금액의 1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상액으로 하고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상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입찰공고 등을 통해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발주자와 법 제69조에 따른 건설공사도급인 중 자기공사자를 제외하고 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이하 “도급인”이라 한다)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제1항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도급계약서에 별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④ 별표 1의 공사의 종류는 별표 5의 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에 따른다. 다만,

하나의 사업장 내에 건설공사 종류가 둘 이상인 경우(분리발주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공사금액이 가장 큰 공사종류를 적용한다.

⑤ 발주자 또는 자기공사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별표 1의3에 따라 지체 없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이 800억 원 이상으로 증액된 경우에는 증액된 대상액을 기준으로 제1항에 따라 재계상한다.

제5조(계상방법 및 계상시기 등) 〈삭제〉

제6조(수급인등의 의무) 〈삭제〉

제7조(사용기준) ① 도급인과 자기공사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예방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의 임금 등
   가. 법 제17조제3항 및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임금과 출장비 전액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보고한 날부터 발생한 비용에 한정한다.)
   나.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를 전담하지 않는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임금과 출장비의 각각 2분의 1에 해당하는 비용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보고한 날부터 발생한 비용에 한정한다.)
   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 업무만을 수행하는 작업지휘자, 유도자, 신호자 등의 임금 전액
   라.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작업을 직접 지휘 · 감독하는 직 · 조 · 반장 등 관리감독자의 직위에 있는 자가 영 제15조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업무수당(임금의 10분의 1 이내)
2. 안전시설비 등
   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안전대 부착설비, 방호장치 (기계 · 기구와 방호장치가 일체로 제작된 경우, 방호장치 부분의 가액에 한함) 등 안전시설의 구입 · 임대 및 설치 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나.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조제12호에 따른 "스마트안전장비 지원사업"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3에 따른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 비용. 다만, 제4조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

다. 용접 작업 등 화재 위험작업 시 사용하는 소화기의 구입·임대비용

3. 보호구 등

가. 영 제74조제1항제3호 및 제7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호구의 구입·수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나. 근로자가 가목에 따른 보호구를 직접 구매·사용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보전하는 비용

다.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 등의 업무용 피복, 기기 등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

라. 제1호가목에 따른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안전보건 점검 등을 목적으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차량의 유류비·수리비·보험료

4. 안전보건진단비 등

가. 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

나. 법 제47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다. 법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 측정에 소요되는 비용

라. 그 밖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법에서 지정한 전문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진단, 검사, 지도 등에 소요되는 비용

5. 안전보건교육비 등

가. 법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의무교육이나 이에 준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위해 건설공사 현장의 교육 장소 설치·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

나. 가목 이외 산업재해 예방이 주된 목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대상자

등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서, 정기간행물을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마.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기원제 등 산업재해 예방을 기원하는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다만, 행사의 방법, 소요된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적합한 행사에 한한다.

바. 건설공사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제보하거나 개선방안을 제안한 근로자를 격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가. 법·영·규칙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필요한 비용

나. 중대재해 목격으로 발생한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구입비용 및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라. 법 제128조의2 등에 따른 휴게시설을 갖춘 경우 온도, 조명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마.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심폐소생을 위해 사용되는 자동심장충격기(AED)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바. 온열·한랭질환으로부터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임시 휴게시설 설치·해체·임대 비용 및 냉·난방기기의 임대 비용

7. 법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대한 대가로 제2조제1항제5호의 자기공사자가 지급하는 비용

8.「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사업에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본사 전담조직에 소속된 근로자의 임금 및 업무수행 출장비 전액. 다만, 제4조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9.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호에 따라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 제24조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 제75조의 노사협의체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비용(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가 없는 현장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법 제6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결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비용을 말한다). 다만, 제4조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급인 및 자기공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 제1항제6호나목부터 마목, 제1항제9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제19조제3항 중 각 호(단, 제14호는 제외한다)에 해당되는 비용
2.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3. 근로자 재해예방 외의 목적이 있는 시설·장비나 물건 등을 사용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4. 환경관리,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③ 도급인 및 자기공사자는 별표 3에서 정한 공사진척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건설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용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삭 제〉

⑤ 도급인 및 자기공사자는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에서 그의 관계수급인에게 해당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사용금액의 감액·반환 등) 발주자는 도급인이 법 제72조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사용내역의 확인) ①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6개월 이내에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 시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 감리자 및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관계 근로감독관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을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도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발주자 또는 감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확인 시 기술지도 계약 체결, 기술지도 실시 및 개선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실행예산의 작성 및 집행 등) ① 공사금액 4천만 원 이상의 도급인 및 자기공사자는 공사실행예산을 작성하는 경우에 해당 공사에 사용하여야 할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실행예산을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 이상으로 별도 편성해야 하며,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해당 공사현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도급인 및 자기공사자는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실행예산을 작성하고 집행하는 경우에 법 제17조와 영 제16조에 따라 선임된 해당 사업장의 안전관리자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삭 제〉

제3장 보 칙

제11조(기술지도 횟수 등) 〈삭제〉

제12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2022-43호, 2022.06.0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에 관한 경과규정) 2022년 8월 17일 이전까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체결한 기술지도 계약에 관한 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기준은 제7조제1항제7호 및 제11조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제2023-49호, 2023.10.0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표 적용례) 별표 1,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 이후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제2024-53호, 2024.09.1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가계약 공사에 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사종류 및 규모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스마트안전장비 구입 · 임대 비용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적용한다.

1.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 · 임대 비용의 10분의 7에 해당하는 비용: 2025년 1월 1일
2.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 · 임대 비용: 2026년 1월 1일

부칙<제2025-11호, 2025.02.12.>

이 고시는 2025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사종류 및 규모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표

(단위: 원)

구분 / 공사종류	대상액 5억 원 미만인 경우 적용 비율(%)	대상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대상액 50억 원 이상인 경우 적용 비율(%)	영 별표5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건설공사의 적용비율(%)
		적용 비율 (%)	기초액		
건축공사	3.11%	2.28%	4,325,000원	2.37%	2.64%
토목공사	3.15%	2.53%	3,300,000원	2.60%	2.73%
중건설공사	3.64%	3.05%	2,975,000원	3.11%	3.39%
특수건설공사	2.07%	1.59%	2,450,000원	1.64%	1.78%

【별표 1의2】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업무 수행 시 수당지급 작업

1. 건설용 리프트·곤돌라를 이용한 작업
2.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행하는 파쇄작업 (2미터 이상인 구축물 파쇄에 한정한다)
3. 굴착 깊이가 2미터 이상인 지반의 굴착작업
4. 흙막이지보공의 보강, 동바리 설치 또는 해체작업
5. 터널 안에서의 굴착작업, 터널거푸집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 작업
6. 굴착면의 깊이가 2미터 이상인 암석 굴착 작업
7. 거푸집지보공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8. 비계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작업
9. 건축물의 골조, 교량의 상부구조 또는 탑의 금속제의 부재에 의하여 구성되는 것(5미터 이상에 한정한다)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작업
10. 콘크리트 공작물(높이 2미터 이상에 한정한다)의 해체 또는 파괴 작업
11.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12. 맨홀작업, 산소결핍장소에서의 작업
13. 도로에 인접하여 관로, 케이블 등을 매설하거나 철거하는 작업
14. 전주 또는 통신주에서의 케이블 공중가설작업

【별표 1의3】 (신설, 2018.10.5.)

설계변경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 · 계상 방법

1. 설계변경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설계변경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설계변경 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설계변경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증감액

2. 제1호의 계산식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증감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설계변경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증감액 = 설계변경 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대상액의 증감 비율

3. 제2호의 계산식에서 대상액의 증감 비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대상액은 예정가격 작성시의 대상액이 아닌 설계변경 전 · 후의 도급계약서상의 대상액을 말한다.

   ○ 대상액의 증감 비율 = [(설계변경 후 대상액 - 설계변경 전 대상액) / 설계변경 전 대상액] × 100%

【별표 2】〈삭제〉

【별표 3】

공사진척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공정율	5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	7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미만	90퍼센트 이상
사용기준	5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상

※ 공정률은 기성공정률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4】<삭제>

【별표 5】

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

공사종류	내 용 예 시
1. 건축공사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나'목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 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및 이와 함께 부대하여 현장 내에서 행하는 공사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전문공사로서 건축물과 관련하여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적 · 장소적으로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
2. 토목공사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가'목 종합적인 계획 ·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 개량하는 공사, '라'목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 오염을 예방 · 제거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 · 저장 · 공급시설 등의 건설공사 및 이와 함께 부대하여 현장 내에서 행하는 공사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전문공사로서 같은 표 제1호 건축공사 외의 시설물과 관련하여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적 · 장소적으로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

공사종류	내 용 예 시
3. 중건설 공사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 되는 공사 중 다음과 같은 공사 및 이와 함께 부대하여 현장 내에서 행하는 공사 가. 고제방 댐 공사 등 댐 신설공사, 제방신설공사와 관련한 제반시설공사 나. 화력, 수력, 원자력, 열병합 발전시설 등 설치공사 화력, 수력, 원자력, 열병합 발전시설과 관련된 신설공사 및 제반 시설공사 다. 터널신설공사 등 도로, 철도, 지하철 공사로서 터널, 교량, 토공사 등이 포함된 복합 시설물로 구성된 공사에 있어 터널 공사비 비중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공사
4. 특수건설 공사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마'목 종합적인 계획 ·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수목원, 공원, 녹지, 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 · 개량 등의 건설공사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 3)에서 구분한 조경공사에 해당하는 공사와 아래 각목에 따른 건설공사 중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적 · 장소적으로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 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 다. 「소방공사업법」에 의한 공사 라. 「문화재수리공사업법」에 의한 공사

비고

1. 건축물과 관련하여 공사가 수행된다 하더라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가 토목공사, 중건설공사가 명백한 경우 해당 공사 종류로 분류한다.
2. 건축공사, 토목공사 및 중건설공사와 함께 부대하여 현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는 개별 법령에 따라 수행되는 공사를 포함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건설업체명		공 사 명	
소 재 지		대 표 자	
공사금액	원	공 사 기 간	~
발 주 자		누계공정률	%
계상된 안전관리비	원		

사용금액		
항 목	( )월 사용금액	누계 사용금액
계		
1. 안전 · 보건관리자 임금 등		
2. 안전시설비 등		
3. 보호구 등		
4. 안전보건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등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7.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비		
8. 본사 전담조직 근로자 임금 등		
9. 위험성평가 등에 따른 소요비용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1. 안전 · 보건관리자 임금 등

구 분	소 속	성 명	선임일	지급금액	지급일	지급 내역	비 고
계				계상액 (계획)	전월까지 누계(A)	금 월(B)	누계 (A+B)

※ 주: 사용내역은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2. 안전시설비 등

구 분	사용일	단위	수량	단 가			사용금액	지급내역	비고
				노무비	자재비	계			
계		계상액 (계획)		전월까지 누계(A)		금 월(B)		누계 (A+B)	

※ 주: 사용내역은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3. 보호구 등

구 분	계 획			사용일	소요 비용			지급내역	비고
	단가	수량	금액		단가	수량	금액		
계			계상액 (계획)		전월까지 누계(A)		금 월(B)	누계 (A+B)	

※ 주: 사용내역은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4. 안전보건진단비 등

구 분	진단기관 (검사기관)	사용일	소요비용	지급 내역		비 고
계			계상액 (계획)	전월까지 누계(A)	금 월(B)	누계 (A+B)

※ 주: 사용내역은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5. 안전보건교육비 등

교육과목	교육주관	교육일	참가인원	소요 경비	비 고
계		계상액 (계획)	전월까지 누계(A)	금 월(B)	누계 (A+B)

※ 주: 사용내역은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구 분	사용일	진단병원	참가인원	소요 경비	비 고
계		계상액 (계획)	전월까지 누계(A)	금 월(B)	누계 (A+B)

※ 주: 사용내역은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7.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비

지도항목	지도기관	점검일	소요 경비	비 고
계	계상액 (계획)	전월까지 누계(A)	금 월(B)	누계 (A+B)

※ 주: 사용내역은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8. 본사 전담조직 근로자 임금 등

□ 조직 현황

시공능력 평가순위	안전보건조직 · 인원 현황			안전보건관리비 계상총액	본사 임금 등 계상액(계획)
	조직명	직책	인원 수		

□ 사용 내역

구 분	소속	직책	성명	보직일	지급액	지급일	비 고
계				계상액 (계획)	전월까지 누계(A)	금 월(B)	누계 (A+B)

※ 주: 본사만 사용내역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현장 제외)

- 증빙서류(예시): 본사 조직규정, 인사명령서, 계좌이체 내역 등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9. 위험성평가 등에 따른 소요비용

품목명	결정일		계 획			사용일	소요 비용			지급내역	비고
	위험성 평가등	노사 협의등	단가	수량	금액		단가	수량	금액		

계	계상액 (계획)	전월까지 누계(A)	금월(B)	누계 (A+B)

※ 주: 사용내역은 항목별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별지 제2호 서식】<삭제>

03 주요 질의회신 Q&A

제1장 총칙(정의 및 적용범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사용되거나 해당 건설업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본사"라 한다)에 설치된 안전전담부서에서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이하 "대상액"이라 한다)이란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건설공사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건설공사발주자를 말한다.
4. "건설공사도급인"이란 발주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5. "자기공사자"란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 관리하는 자(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법 제2조제11호의 건설공사 중 총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단가계약에 의하여 행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참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1호〉

※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질의

1) 단가 계약형태의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해야 하는지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가 아니더라도 연간 단가계약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공사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해야 하는지

회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3조에 따라 단가계약으로 이루어지는 총계약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함.
  - 참고로 2025년 1월 1일 이전에는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에 한정하여 계상토록 하였으나,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함.

(건설산재예방정책과-3073, 2024.10.07.)

질의

2) 2개 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통합하여 사용 가능한지

EPC공사로서 기존 현장과 동일한 장소에서 진행되며 발주자와 시공자가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통합 사용 가능한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계약에 의해 행하는 제도로서 개별공사의 공사도급 내역서상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인 공사에 그 의무를 두고 있으므로 별도의 계약에 의해 행해지는 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각각 별개로 계상되고 사용되어야 함.

  - 다만, 건설공사에 있어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장소적으로 서로 인접하면서 동일한 관리조직 및 체계하에서 시공되고 있는 경우라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 귀 질의의 EPC 공사현장이 기존 현장과 동일한 장소에서 진행되며 발주자와 시공자가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통합하여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참고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통합하여 사용할 경우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024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집)

질의

3) 용역 계약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해야 하는지

건설공사발주자는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일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용역이나 기타 도급의 경우에도 계상 의무가 있는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건설공사 중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경우 같은 법 제72조 및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함.

  - 따라서, 건설공사가 아닌 용역계약 등의 경우 동 조항에 해당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할 의무가 없음.

- 참고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11호에 따른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함.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

(건설산재예방정책과-3075, 2024.10.07.)

질의

4) 해외 건설공사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해야 하는지

해외에서 진행되는 건설공사의 경우 국내법을 그대로 적용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해야 하는지

회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3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건설공사 중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국내 공사에 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해외 건설공사는 적용 대상이 아니며, 동 조항에 해당되는 건설공사가 진행되는 국내 현장에 대해서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에 따라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계상 의무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각종 의무가 부과됨.

(건설산재예방정책과-780, 2024.02.29.)

제2장 계상의무 및 기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계상의무 및 기준) ① 발주자가 도급계약 체결을 위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하거나, 자기공사자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이상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일부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납품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을 대상액에 포함하여 산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을 대상액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에 해당하는 값을 비교하여 그 중 작은 값 이상의 금액으로 계상한다.

1. 대상액이 5억 원 미만 또는 50억 원 이상인 경우: 대상액에 별표 1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
2. 대상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대상액에 별표 1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에 기초액을 합한 금액
3. 대상액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제4조제1항의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 계획상 책정된 총공사금액의 1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상액으로 하고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상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입찰공고 등을 통해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발주자와 법 제69조에 따른 건설공사도급인 중 자기공사자를 제외하고 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이하 "도급인"이라 한다)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제1항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도급계약서에 별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④ 별표 1의 공사의 종류는 별표 5의 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에 따른다. 다만, 하나의 사업장 내에 건설공사 종류가 둘 이상인 경우(분리발주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공사금액이 가장 큰 공사종류를 적용한다.

⑤ 발주자 또는 자기공사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별표 1의3에 따라 지체 없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이 800억 원 이상으로 증액된 경우에는 증액된 대상액을 기준으로 제1항에 따라 재계상한다.

질의

1) 완제품에 해당하는 물품이 무엇인지

완제품 형태로 제작·납품되는 물품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물품이 해당 되는지

회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에 따라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또는 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때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를 비교하여 작은 금액 이상으로 계상토록 하고 있음.

  -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완제품”이란 일정한 조건에 알맞게 제작 공정을 완전히 마친 제품으로 특정 제품 또는 작업방법상의 해석이 아닌 해당 공사내역상 제조원가로 구성되어 현장에 제작·납품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 시멘트, 벽돌, 배관, 볼트 등 일반 건설자재와 같이 공사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이 아닌 터빈발전기 및 고압급수가열기, 보일러 등과 같이 최종 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일부분이 되는 완성된 물품을 말함.

(2024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집)

질의

2) 발주자가 제공하는 관급자재비를 제외하고 계상하면 되는지

발주자가 관급자재를 지급하는 경우 관급자재비를 제외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면 되는지

회시

○ 발주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완제품을 가지고 별도의 설치업체가 직접 시공까지 함께 진행할 경우 해당 재료비 및 완제품 가액은 대상액에 포함되지 않으나,

-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 또는 완제품을 도급사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대상액에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면 됨.

1. 대상액이 5억미만 또는 50억원 이상 공사

가) 공사내역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 : ①와 ②를 비교하여 작은 값 이상의 금액으로 계상

① (직접재료비+간접재료비+직접노무비+발주자제공재료비+완제품가액) ×비율

② (직접재료비+간접재료비+직접노무비)×비율×1.2

나) 공사내역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 : ①와 ②를 비교하여 작은 값 이상의 금액으로 계상

① {총공사금액(부가가치세 포함)×70%} ×비율

② [{총공사금액(부가가치세 포함)×70%}-(발주자제공재료비+완제품가액)] ×비율×1.2

2. 대상액이 5억이상 50억원 미만 공사

가) 공사내역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 : ①와 ②를 비교하여 작은 값 이상의 금액으로 계상

① (직접재료비+간접재료비+직접노무비+발주자제공재료비+완제품가액) ×비율+기초액

② {(직접재료비+간접재료비+직접노무비)×비율+기초액}×1.2

나) 공사내역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 : ①와 ②를 비교하여 작은 값 이상의 금액으로 계상

① {총공사금액(부가가치세 포함)×70%} ×비율+기초액

② [{총공사금액(부가가치세 포함)×70%-(발주자제공재료비+완제품가액)} ×비율 +기초액]×1.2

(건설산재예방정책과-153, 2024.01.11.)

질의

3) EPC 공사는 총공사금액으로 계상하는지

EPC 공사는 총공사비에 설계비, 구입비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포함하여 계상하는지

회시

- 전체 EPC 공사금액 중 설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면 됨

  - 다만, 구입 및 시공의 재료비 중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또는 납품되어 도급자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라면 아래와 같이 대상액에 포함하여 계상해야 함.

1. 대상액이 5억미만 또는 50억원 이상 공사

가) 공사내역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 : ①와 ②를 비교하여 작은 값 이상의 금액으로 계상

① (직접재료비+간접재료비+직접노무비+발주자제공재료비+완제품가액) ×비율

② (직접재료비+간접재료비+직접노무비)×비율×1.2

나) 공사내역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 : ①와 ②를 비교하여 작은 값 이상의 금액으로 계상

① {총공사금액(부가가치세 포함)×70%} ×비율

② [{총공사금액(부가가치세 포함)×70%}-(발주자제공재료비+완제품가액)] ×비율×1.2

2. 대상액이 5억이상 50억원 미만 공사

가) 공사내역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 : ①와 ②를 비교하여 작은 값 이상의 금액으로 계상

① (직접재료비+간접재료비+직접노무비+발주자제공재료비+완제품가액) ×비율+기초액

② {(직접재료비+간접재료비+직접노무비)×비율+기초액}×1.2

나) 공사내역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 : ①와 ②를 비교하여 작은 값 이상의 금액으로 계상

① {총공사금액(부가가치세 포함)×70%} ×비율+기초액

② [{총공사금액(부가가치세 포함)×70%-(발주자제공재료비+완제품가액)} ×비율 +기초액]×1.2

(건설산재예방정책과-3074, 2024.10.07.)

질의

4) 공사내역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계상방법은

공사내역이 재료비, 노무비 등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계상을 어떻게 하는지

회시

- 공사내역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아래의 방법으로 대상액을 산정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1]을 참고하여 해당 비율을 적용하여 계상하면 됨

가) 대상액이 5억미만 또는 50억원 이상 공사 : ①와 ②를 비교하여 작은 값 이상의 금액으로 계상

① {총공사금액(부가가치세 포함)×70%} ×비율

② [{총공사금액(부가가치세 포함)×70%}-(발주자제공재료비+완제품가액)] ×비율×1.2

나) 대상액이 5억이상 50억원 미만 공사 : ①와 ②를 비교하여 작은 값 이상의 금액으로 계상

① {총공사금액(부가가치세 포함)×70%} ×비율+기초액

② [{총공사금액(부가가치세 포함)×70%-(발주자제공재료비+완제품가액)} ×비율 +기초액]×1.2

(2024년 산업안전보건관리비해설집)

질의

5) 차수분 계약도 '25.1.1부터 적용하는 비율을 적용해도 되는지

'25.1.1.부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비율이 확대 적용되는데 '25.1.1.이전에 착공하여 진행중인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25년 차수분 계약부터 적용 가능한지

회시

- '24.9.19.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2024-53호')」이 개정되면서 별표1 공사종류 및 규모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비율이 변경되었으나, 단서 조항을 통해 '25.1.1. 이후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되므로, 장기계속공사의 차수분 계약은 해당 되지 않음.

  - 따라서 귀 현장은 계약 당시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1]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고,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라도 계약 당시의 고시의 비율을 적용하여 재계상하여야 함.

(건설산재예방정책과-3073, 2024.10.07.)

질의

6)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구간에 기초액을 두는 사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시 대상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구간에 기초액을 두는 사유

회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1]에서 대상액별로 비율을 정하고 있으며, 대상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경우 별도 기초액을 더하도록 하고 있음.

  - 기초액을 적용하는 사유는 대상액 5억원 미만과 50억원 이상의 비율 차이가 상이함에 따라 발생하는 차이를 보정하기 위한 것임.

(2024년 산업안전보건관리비해설집)

질의

7) 수의계약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지하는 방법은

건설공사 발주자가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수의계약 등 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어떠한 방법으로 알려야 하는지

회시

- 공공공사는 수의계약이라 하더라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 등 기관별 적용되는 입찰 · 계약관련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등), 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등을 통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미리 알려주면 됨.

  - 다만, 입찰공고의 의무가 없는 민간공사로서 수의계약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금액 고지방법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고지 등 어떠한 형태로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미리 알려주면 됨.

(2024년 산업안전보건관리비해설집)

질의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낙찰률 적용이 가능한지

발주자가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입찰 과정에서 낙찰률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시

- 2019년 1월 1일 이후부터 발주하는 건설공사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계약금액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 아울러, 발주자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에게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입찰공고 등을 통해 미리 알려야 하고, 공사도급계약서에 별도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건설산재예방정책과-2668, 2023.7.11.)

질의

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건설공사의 종류 및 담당 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해야 하는 건설공사 종류와 해당 공사의 법률을 담당하는 기관이 어디인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1호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함.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 위 법을 담당하는 소관 부처는 (가목) 국토교통부, (나목) 산업통상자원부, (다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라목) 소방청, (마목) 국가유산청임.

(건설산재예방정책과-2876, 2024.09.11.)

질의

10) 반도체공장 건설공사는 공사종류 중에 어디에 해당 되는지

고시 [별표5]의 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 중에 '반도체 공장' 건설공사는 어디에 해당 되는지

회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5] 건설공사 종류 예시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는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 분야 및 업무내용을 준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석은 소관부처에서 가능함.

  - 따라서 귀 질의의 '반도체 공장' 건설공사가 건축 또는 토목공사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소관하는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여 적용하기 바람.

(건설산재예방정책과-781, 2025.01.08.)

질의

11) 주된 공사와 부대하는 공사, 시간적·장소적으로 독립하는 공사의 기준이 무엇인지

건축공사, 토목공사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전문공사는 건축공사로, 토목공사는 토목공사로 구분 하는지, 또한 시간적·장소적으로 독립된다는 기준은 무엇인지

회시

- 주된 공사와 부대하여 현장내에서 함께 진행되는 전문공사의 경우 주된 공사가 건축일 경우에는 건축 비율을, 토목일 경우에는 토목 비율을 적용하면 될 것이며,

  - 주된 공사 준공 후 유지보수 또는 하자보수 공사와 같이 시간·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시행되는 공사의 경우 주된 공사의 종류와 상관없이 건축 또는 토목에 해당되는 비율을 적용함.

- 시간적·장소적으로 독립된다는 의미는 주된 공사가 준공된 후 유지보수 공사 또는 하자보수 공사가 수행되는 것처럼 시간적으로 독립되거나, 주된 공사와 이루어지는 현장이 아닌 독립적으로 분리된 장소에서 수행되는 공사의 경우를 말함.

(건설산재예방정책과-781, 2024.02.29.)

질의

12) 설계변경시 당초 대상액(설계금액&낙찰금액) 기준이 무엇인지

예정가격 작성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계상되었으나, 도급내역서에는 낙찰률이 반영되었고 그 후 설계변경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1의3]에 따라 조정·계상 시 대상액을 무엇으로 산정하는지

회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제5항에 따라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별표 1의3에 따라 지체없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계상하여야 함.

  - 이때, 대상액 산정은 예정가격 작성시의 금액이 아닌 낙찰율이 적용된 설계변경 전·후의 도급계약서상의 대상금액을 말함.

(건설산재예방정책과-485, 2025.02.11.)

13) 공사종류 개편('24.7.1)이전 공사의 설계변경시 비율 적용은

공사종류 개편 이전부터 진행 중인 공사에서 2024년 7월 1일 이후 계약금액 조정(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 발생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비율적용은

회시

- '23.10.5일 개정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제2023-49호)」에서는 공사종류 및 규모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표와 건설공사의 종류 예시를 새로 정하면서 부칙 제2조에서 '24.7.1. 이후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귀 질의와 같이 공사종류 개편 이전부터 진행 중인 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가 준공할 때까지 착공 당시 적용 했던 고시 [별표1(공사종류 및 규모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표)]의 비율을 적용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재계상 하면 됨.

(건설산재예방정책과-781, 2024.07.19.)

질의

14) 50억원 미만 공사가 설계변경으로 50억원 이상 공사로 변경된 경우 계상방법은

50억원 미만 공사에서 설계변경 후 50억원 이상으로 증액되어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를 조정 계상할 때, 고시 [별표1]을 보면 대상액이 50억원 미만과 50억원 이상 적용비율이 다른데 어떤 비율을 적용하면 되는지

회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제5항에 따라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별표 1의3]의 조정·계상 방법에 따라 대상액의 증감 비율을 산정하여 계상하면 됨.

  - 다만, 800억원 미만 공사가 800억원 이상으로 증액되는 경우에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1]의 비율을 적용하여 재계상해야 하며, 그 외에는 증감 비율만 적용함.

(건설산재예방정책과-4500, 2023.11.28.)

※【별표 1의3】 설계변경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 · 계상 방법

1. 설계변경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설계변경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설계변경 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설계변경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증감액
2. 제1호의 계산식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증감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설계변경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증감액 = 설계변경 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대상액의 증감비율
3. 제2호의 계산식에서 대상액의 증감비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대상액은 예정가격 작성 시의 대상액이 아닌 설계변경 전 · 후의 도급계약서상의 대상액을 말한다.
   - 대상액의 증감 비율 = [(설계변경 후 대상액 − 설계변경 전 대상액)/설계변경 전 대상액] × 100%

질의

15)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 설계당시 금액, 공정률도 고려해서 재계상 하는지

1)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으로 증액된 경우, 발주 당시 설계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2)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이 증가되어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공사로 변경된 경우, 공정율(10%)을 연계하여 재계상하는지

회시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제5항에 따라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별표1의3에 따라 대상액의 증감율을 반영하여 재계상하도록 정하고 있음.

- 다만,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으로 증액된 경우에는 대상액에 800억원 이상 공사금액의 비율을 적용하고, 대상액은 예정가격 작성시의 대상액(설계금액)이 아닌 설계변경 전·후의 도급계약서상의 대상액을 말함.

2) 공사 공정률과 연계하는 것이 아닌 전체 증액된 공사금액의 도급내역서상 대상액을 기준으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1] 비율을 적용하여 재계상하여야 함.

(건설산재예방정책과-1267, 2024.04.15.)

질의

16) 토목공사는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1,000억원 이상 증액시 요율표를 참고하여 재계상 하면 되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5에 보면 토목공사의 경우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이 공사금액 1000억원 이므로, 고시 제4조제5항의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이 800억 이상으로 증액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토목공사는 1,000억원을 기준으로 재계상 하는게 맞는지

회시

- 토목공사의 경우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이 1,000억원 이상으로 증액된 경우에는 증액된 대상액을 기준으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제1항에 따라 재계상하면 됨.

(건설산재예방정책과-446, 2025.02.07.)

질의

17) 턴키공사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과소 계상되었을 경우 추가 계상이 가능한지

일괄입찰(Turn Key) 계약 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과소 계상되었을 때 발주자에게 추가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1항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에 따라 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미계상 또는 부족계상이 발생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발주자에게 부여하고 있음.

  - 일괄입찰 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총 공사 산출내역서의 비목별 내역을 작성하여 발주자에 제출하기 전까지는 발주자는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특성이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발주자는 산정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적정한지 확인할 의무가 있음.

- 이에 따라, 발주자는 과소계상된 금액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추가 지급하는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재계상하여야 함.

(건설산재예방정책과-3603, 2024.11.21.)

제3장 사용기준

1.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의 임금 등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사용기준) ① 도급인과 자기공사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예방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의 임금 등

가. 법 제17조제3항 및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임금과 출장비 전액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보고한 날부터 발생한 비용에 한정한다.)

나.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를 전담하지 않는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임금과 출장비의 각각 2분의 1에 해당하는 비용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보고한 날부터 발생한 비용에 한정한다.)

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 업무만을 수행하는 작업지휘자, 유도자, 신호자 등의 임금 전액

라.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작업을 직접 지휘 · 감독하는 직 · 조 · 반장 등 관리감독자의 직위에 있는 자가 영 제15조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업무수당(임금의 10분의 1 이내)

질의

1) 안전관리자 임금 지급 기준일을 언제로 보면 되는지

안전관리자로 선임되면 지방고용노동관서 선임 보고와 관계없이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항목으로 사용 가능한지

회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안전관리자 등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보고한 날부터 발생한 비용에 한정하므로, 선임보고일로부터 실제 근무를 시작한 날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사용하면 될 것임.

(건설산재예방정책과-1840, 2023.05.08.)

질의

2) 안전관리자 임금에 포함되는 건강보험료 등도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항목으로 사용 가능한지

안전관리자의 임금에 건강보험료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항목으로 사용하는게 맞는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발주자가 해당 현장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시공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선임된 안전·보건관리자 임금과 출장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사용이 가능함.

  - 동 규정에서 말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이때 임금은 제세공과금의 공제 전 금액을 말함

- 따라서, 귀 질의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제세공과금의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서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각종 제세공과금이 포함된 임금 전액이 해당되므로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항목으로 사용이 가능함.

  - 다만, 제세공과금의 사업주 부담분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므로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항목으로 사용이 불가함.

(건설산재예방정책과-2283, 2024.07.19.)

질의

3) 안전관리자 퇴직금을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항목으로 사용가능한지

현장에서 퇴직하는 안전관리자의 퇴직급여를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제1호에서의 임금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및 당해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의 퇴직금 또는 퇴직급여충당금 등이 모두 포함될 것이므로 안전관리자의 퇴직급여를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항목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함.

  - 다만, 당해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기간에 한정하지 않고 다른 건설공사 현장 등에서 근무한 기간까지 합산하여 사용하는 것은 불가함.

〈 퇴직근로자 급여 지급 예시 〉

※ A 현장에서 퇴직하는 안전관리자의 퇴직금이 2천만 원이고, 총 재직기간이 10년이며 A현장에서 1년 근무한 경우

☞ A현장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최대 2백만 원까지 사용 가능

(2024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집)

질의

4) 안전관리자 연차수당 정산은 근무한 현장에서 하는게 맞는지

연차수당 정산 시 해당 연차수당이 발생된 현장에서 정산하는지, 아니면 현재 근무중인 현장에서 정산하는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당해 현장에 대하여 계상 및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연차수당은 연차가 발생된 현장에서 지급되어야 하는바, 해당 기간에 안전관리자로 근무한 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항목으로 사용·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건설산재예방정책과-627, 2025.02.25.)

질의

5) 안전관리자를 공동 선임하였을 경우 현장별 임금 분담 비율은

토목공사현장으로 같은 부지내에 A현장(99억원), B현장(58억원)에 대해 안전관리자 1명을 겸임으로 공동선임(A+B 현장) 하였을 경우, 2개 현장의 안전관리자 인건비 분담 비율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회시

- A,B 현장의 안전관리자로 공동 선임된 경우라 하더라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제1호 나목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임금을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항목으로 사용이 가능함.

  - 다만, 전담 안전관리자가 아닌 경우 임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비용만 사용이 가능하므로, A,B 각 현장에서 공사금액 비율대로 분담하여 안전관리자 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항목으로 사용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건설산재예방정책과-335, 2024.01.24.)

질의

6) 관계수급인(100억원 미만)이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임금을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항목으로 사용 가능한지

당 현장에서는 공사금액 100억 미만의 관계수급인(공사금액 56억)이 도급사의 승인을 받은 뒤,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자 선임 보고서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완료 후,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하여 수행하였습니다. 해당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항목으로 사용 가능한지

회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제1호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3항 및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임금과 출장비 전액은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를 전담으로 선임하고 관할 지방관서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을 제출하여 안전관리자 선임 보고를 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의 임금은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항목으로 사용이 가능함.

(건설산재예방정책과-2283, 2024.11.04.)

질의

7) 안전보조원 교육 출장시 임금 및 출장비를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항목으로 사용 가능한지

안전보조원이 안전보건교육을 참석할 경우 발생되는 임금 및 출장비를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항목으로 사용 가능한지

회시

- 안전보조원 업무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제1항제1호 다목에 해당되어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항목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라면, 제5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참석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항목으로 사용이 가능하나, 출장비는 불가할 것으로 판단됨.

(건설산재예방정책과-298, 2025.01.24.)

질의

8)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현장에서 화재감시자 등 임금을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항목으로 사용 가능한지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현장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았을 경우 작업지휘자, 유도자, 신호수, 화재감시자 등의 임금을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시

-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현장에서는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와는 상관없이 산업재해 예방 업무만을 수행하는 작업지휘자, 유도자, 신호수, 화재감시자 등의 임금을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항목으로 사용이 가능함.

  - 다만,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는 현장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았을 경우 작업지휘자, 유도자, 신호수, 화재감시자 등의 임금은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항목으로 사용이 불가함.

(건설산재예방정책과-2341, 2023.06.14.)

질의

9)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산재예방업무를 일부 수행한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을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항목으로 사용 가능한지

채용된 근로자에게 월 단위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1개월 중 3일은 산재예방업무만을 수행하였다면 3일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제1호 다목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업무만을 수행하는 작업지휘자, 유도자, 신호자 등의 임금전액을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음.

  - 다만, 귀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근로자의 임금 중 안전시설물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수행한 기간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항목으로 사용 가능할 것이나, 당초 지급하는 임금과 중복하여 지급하는 것은 불가함.

(건설산재예방정책과-3558, 2024.11.13.)

질의

10) 작업지휘자 임금을 발주자가 인정하는 작업내용에 대해서만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항목으로 사용 가능한지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지휘자가 실제로 배치되었다 하더라도, 작업 전체가 아닌 발주자가 작업지휘자 투입의 필요성에 대해 인정하는 일부 작업(인력과 장비의 투입이 많고 동선이 복잡하여 위험성이 높은 작업 등)에 대해서만 해당 인력의 임금을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항목으로 정산하는 것이 관련 규정 등에 적합한지

회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제1호 다목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 업무만을 수행한 작업지휘자 등 임금은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항목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 다만, 귀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항목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지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작업내용에 따라 정산하는 것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사안일 것으로 판단됨.

(건설산재예방정책과-154, 2024.1.12.)

질의

11) 관리감독자 업무수당 지급을 위한 기준이 있는지

안전보건업무를 직접 지휘하는 관리감독자의 업무의 연속성, 업무시간, 수당 소급 적용, 증빙서류 등에 대하여 기준이 있는지

회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조·반장 등 관리감독자의 직위에 있는 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업무수당(월 급여액의 10% 이내)은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항목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이나, 수행하는 업무의 연속성 및 시간 등에 대한 제한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아울러,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업무 수행 시 지급하는 수당의 소급 여부는 따로 법으로 정하고 있지 않음으로 발주자와 시공사가 관련 계약법령을 참고하여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됨.

  -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업무 수행 시 지급하는 수당의 증빙서류의 종류 또한 법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수당의 지급 여부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2024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집)

2. 안전시설비 등(스마트안전 장비 구입 · 임대 등)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사용기준) ① 도급인과 자기공사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예방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2. 안전시설비 등

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안전대 부착설비, 방호장치(기계·기구와 방호장치가 일체로 제작된 경우, 방호장치 부분의 가액에 한함) 등 안전시설의 구입·임대 및 설치 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나.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조제5호에 따른 "스마트안전장비 지원사업"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3에 따른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 · 임대 비용. 다만, 제4조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

다. 용접 작업 등 화재 위험작업 시 사용하는 소화기의 구입 · 임대비용

〈참고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

※ 제2조제5호 :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이란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중 인공지능, 로봇공학, 정보통신, 사물인터넷, 센서 기술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재해예방 효과가 있는 안전보건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참고 : 건설기술진흥법〉

※ 제62조의3(스마트 안전관리 보조 · 지원)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무선안전장비와 융 · 복합건설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 ·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보조 · 지원의 대상 · 절차, 관리 및 감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질의

1) 추락안전매트 설치비용을 안전시설비 항목으로 사용 가능한지

고소작업대 작업중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추락안전매트를 설치할 경우 설치 비용을 안전시설비 항목으로 사용 가능한지

회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제2호 가목에 따라 근로자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안전시설의 구입·임대 및 설치 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시설비 항목으로 사용이 가능함.

  - 따라서, 귀 질의의 '추락안전매트'가 고소작업대 작업 중 추락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경우라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시설비 항목으로 사용이 가능함.

(건설산재예방정책과-2334, 2024.07.24.)

질의

2) 전산볼트용 추락방지대 구입비를 안전시설비 항목으로 사용 가능한지

전기업체의 케이블트레이 설치 등 모든 상부작업시 전산볼트용 추락방지대가 있으면 보다 안전하게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전산볼트용 추락방지대 구입비를 안전시설비 항목으로 사용 가능한지

회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제2호 가목에 따라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안전시설의 구입·임대 및 설치 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시설비 항목으로 사용이 가능함.

  - 따라서, 귀 질의의 전산볼트용 추락방지대가 원활한 공사수행이나 관련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품목이 아닌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이라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시설비 항목으로 사용이 가능함.

(건설산재예방정책과-534, 2024.02.08.)

질의

3) PHC 말뚝 상부 덮개 구입비를 안전시설비 항목으로 사용 가능한지

토목현장에서 PHC 파일 작업 시 발빠짐으로 인한 근로자의 넘어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PHC 말뚝 상부에 덮개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 덮개 구입비를 안전시설비 항목으로 사용 가능한지

회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제2호 가목에 따라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안전시설의 구입·임대 및 설치 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시설비 항목으로 사용이 가능함.

  - 따라서 귀 질의의 PHC 말뚝 상부 덮개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2항에 해당되지 않고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목적으로만 활용된다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시설비 항목으로 사용이 가능함.

(건설산재예방정책과-534, 2024.02.08.)

질의

4) 텅스텐 논슬립 구입비를 안전시설비 항목으로 사용 가능한지

근로자가 A형 사다리 승하강시 미끄럼 방지를 위해 텅스텐 논슬립을 구입하여 설치하는 경우 안전시설비 항목으로 사용 가능한지

회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제2호 가목에 따라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안전시설의 구입·임대 및 설치 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시설비 항목으로 사용이 가능함.

  - 귀 질의의 텅스텐 논슬립을 근로자의 전도 및 추락방지 등을 위한 목적으로 A형 사다리에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라면 안전시설비 항목으로 사용이 가능함.

(건설산재예방정책과-534, 2025.02.25.)

질의

5) 전기, 정보통신 등의 공사에서 교통안전표지판 설치비용을 안전시설비 항목으로 사용 가능한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비가 공사내역에 반영되지 않는 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소방 공사의 경우 도로 등에서의 작업 및 중장비에 의한 사고예방을 위해 교통안전표지판 및 시설물을 설치하는 비용을 안전시설비 항목으로 사용 가능한지

회시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며,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사고예방을 위한 주의표지판, PE휀스 등 교통안전 시설에 대해서는 사용이 가능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불가함.

  - 다만,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국가유산 수리공사 등은 관련 법 및 계약예규에 따라 공사금액에 반영된 안전관리비가 없는 공사의 경우 도로 등 작업 중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교통안전시설물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시설비 항목)로 사용이 가능함

    * 공사금액에 안전관리비가 반영되어 있는 경우라면 해당 시설 설치비용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불가함

(2024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집)

질의

6) 지게차 방호장치 설치비를 안전시설비 항목으로 사용 가능한지

지게차의 LED 라인빔 및 후방 음성 감지기 등 방호장치와 설치 인건비를 안전시설비 항목으로 사용 가능한지

회시

- 지게차 방호장치가 근로자와 건설장비의 충돌, 협착 등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접근방지 용도로만 사용되는 경우라면 방호장치 구입 및 설치에 필요한 인건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제2호 가목에 따라 안전시설비 항목으로 사용이 가능함.

(2024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집)

질의

7) 경보·유도시설 설치비용을 안전시설비 항목으로 사용 가능한지

위험구간 등에 근로자 접근방지 목적으로 경보 및 유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안전시설비 항목으로 사용 가능한지

회시

- 건설현장 내 추락, 질식 등 재해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가 접근하거나 위험상황 발생 시 동 장소의 위험을 해당 근로자에게 예보 또는 경보해 주는 목적을 가진 장비의 구입 및 임대에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시설비 항목으로 사용이 가능함.

  - 다만, 동 장비가 단순히 해당 현장의 시설물 보호, 근로자 외 외부인의 출입 금지 등 현장 근로자 재해예방 목적 외 다른 목적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이 불가함.

(2024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집)

질의

8) 안전용역팀 투입시 용역비를 안전시설비 항목으로 사용 가능한지

사면절토 구간의 추락위험 방지를 위하여 웨빙띠 설치를 위해 안전용역팀을 투입하여 안전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용역팀 용역비를 안전시설비 항목으로 사용 가능한지

회시

-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시설물 설치 용역업체와 계약 후 안전용역팀을 투입하여 안전시설물 등을 설치한 경우 소요비용은 「건설업 산업 안전 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안전시설비 항목으로 사용이 가능함.

(2024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집)

질의

9) 안전시설물을 설치할 때 용역으로 하는 경우와 안전보조원이 하는 경우 비용처리 항목은

현장에서 추락위험 방지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대행 용역(인건비 포함)을 통해 시행한 경우와 산업재해예방 업무만을 위해 고용한 안전보조원이 설치한 경우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시

- 추락위험 방지시설 설치를 대행 용역을 통해 설치한 경우(설치금액에 인건비 포함)에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제1항제2호 가목에 따라 안전시설비 항목으로 사용 가능하고,

  - 산업재해 예방 업무만을 수행하기 위해 직접 고용한 안전보조원이 설치한 경우라면 안전보조원의 인건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제1호 다목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항목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건설산재예방정책과-276, 2025.01.23.)

질의

10) 안전시설물 설치·해체 용역시 이윤 등 기타비용도 인정 가능 한지

용역업체를 통하여 안전지킴이를 제공받고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순수한 인건비 외 이윤 등 기타 비용도 안전시설비 항목으로 사용 가능한지

회시

- 용역업체를 통하여 안전지킴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제1항제2호 가목에 따라 인건비 외 부가적으로 발생되는 이윤(10% 초과할 수 없음)에 대해서도 안전시설비 항목으로 사용이 가능함.

(건설산재예방정책과-276, 2024.11.21.)

질의

11) 에어백 조끼 구입비를 안전시설비 항목으로 사용 가능한지

근로자 추락 시 이를 감지하여 내장된 에어백이 작동하는 조끼를 구입하는 경우 안전시설비 항목으로 사용 가능한지

회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제2호 나목에서는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조제5호에 따른 스마트안전장비 지원사업"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3에 따른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 비용의 70%에 해당하는 비용(다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2를 초과할 수 없음)은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해당 에어백 조끼가 상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구입·임대비용을 안전시설비 항목으로 사용이 가능함.

(2024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집)

질의

12) 안전관리 솔루션(Web/App)을 안전시설비 항목으로 사용 가능한지

안전관리 솔루션(Web/App) 사용료(월별 구독료 & 현장 시스템 구축비)를 안전 시설비 항목으로 사용 가능한지

회시

-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시스템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스마트 안전장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구입·임대 비용의 70%에 해당하는 비용(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2를 초과할 수 없음)은 안전시설비 항목으로 사용이 가능함.

  - 다만, 상기 품목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제9호에 따라 건설현장 유해·위험 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험성평가 등을 거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에서 결정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참고하기 바람.

〈 스마트 안전장비 해당여부 확인가능 기관 〉

1.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 안전보건공단 중소기업지원실 지원계획부
2.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3 : 국토안전관리원 건설안전관리실

(건설산재예방정책과-209, 2024.01.15.)

질의

13)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플랫폼 구축 비용을 안전시설비 항목으로 사용 가능한지

근로자가 작업 전 휴대폰으로 현장에 비치된 QR코드 접속 시 관리자가 휴대폰으로 현장출입을 확인하고, 근로자는 작업내용, 안전수칙 확인하고 AI관리자에게 알려주는 기능이 있는 모바일앱을 사용할 경우 구축 비용을 안전시설비 항목으로 사용 가능한지

회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스마트 안전장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입·임대 비용의 70%에 해당하는 비용(다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2를 초과할 수 없음)은 안전 시설비 항목으로 사용이 가능함.

- 다만, 상기 품목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제9호에 따라 건설현장 유해·위험 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험성평가 등을 거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에서 결정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참고하기 바람.

〈 스마트 안전장비 해당여부 확인가능 기관 〉

1.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 안전보건공단 중소기업지원실 지원계획부
2.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3 : 국토안전관리원 건설안전관리실

(건설산재예방정책과-233, 2024.01.16.)

질의

14) 유해가스 모니터링시스템 구축비용을 안전시설비 항목으로 사용 가능한지

동절기 양생구간, 밀폐공간 유해가스 등 작업현장의 유해가스 측정기를 설치하고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긴급상황 발생 시 경광등 시스템 및 어플 알림 등 스마트 안전장비 구축 비용을 안전시설비 항목으로 사용 가능한지

회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스마트 안전장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입·임대 비용의 70%에 해당하는 비용(다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2를 초과할 수 없음)은 안전 시설비 항목으로 사용이 가능함.

- 다만, 상기 품목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제9호에 따라 건설현장 유해·위험 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험성평가 등을 거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에서 결정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참고하기 바람.

〈 스마트 안전장비 해당여부 확인가능 기관 〉

1.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 안전보건공단 중소기업지원실 지원계획부
2.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3 : 국토안전관리원 건설안전관리실

(2024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집)

15) 소화기 구입·임대비용을 안전시설비 항목으로 사용 가능한지

공사용 분전반, 건설현장 건물 내 화재 예방을 위해 휴게실, 사무실 등에 설치하는 소화기도 안전시설비 항목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 화재 위험작업(용접, 전기, 인화성물질 취급 등) 중 근로자 보호 목적이 아닌 분전반, 사무실 등에 설치하기 위해 구입하는 소화기에 대해서는 안전시설비 항목으로 사용이 불가할 것이나,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제2호 다목에 따른 용접작업 등 화재 위험작업 시 사용하는 소화기의 구입·임대 비용은 안전시설비 항목으로 사용이 가능함

(건설산재예방정책과-534, 2025.02.25.)

3. 보호구 등(안전인증 보호구, 안전 · 보건관리자 피복 등)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사용기준) ① 도급인과 자기공사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예방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3. 보호구 등

가. 영 제74조제1항제3호 및 제7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호구의 구입 · 수리 ·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나. 근로자가 가목에 따른 보호구를 직접 구입 · 사용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보전하는 비용

다.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 등의 업무용 피복, 기기 등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

라. 제1호가목에 따른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안전보건 점검 등을 목적으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차량의 유류비 · 수리비 · 보험료

〈참고 : 산업안전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3호〉

※ 제74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 ① 법 제8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구

가.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 나. 안전화 / 다. 안전장갑 / 라. 방진마스크 / 마. 방독마스크 / 바. 송기(送氣)마스크 / 사. 전동식 호흡보호구 / 아. 보호복 / 자. 안전대 / 차. 차광(遮光) 및 비산물(飛散物) 위험방지용 보안경 / 카. 용접용 보안면 / 타.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참고 : 산업안전법 시행령 제77조제1항제3호〉

※ 제77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① 법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구

가. 안전모(제74조제1항제3호가목의 안전모는 제외한다)

나. 보안경(제74조제1항제3호차목의 보안경은 제외한다)

다. 보안면(제74조제1항제3호카목의 보안면은 제외한다)

질의

1) 차광보안경 구입비용을 보호구 항목으로 사용 가능한지

용접, 옥외 근로자를 위해 시력 보호용 차광보안경을 구입할 경우 비용을 보호구 항목으로 사용 가능한지

회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제3호 가목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3호 및 제77조제1항 제3호에 따른 보호구의 구입·수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함.

  - 따라서, 귀 질의의 차광보안경이 위 규정에 해당하는 제품인 경우라면 보호구 항목으로 사용이 가능함.

〈 안전인증 보호구 및 자율안전확인 대상 보호구 항목 〉

〈산업안전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3호〉

※ (안전인증 보호구) 가.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 나. 안전화 / 다. 안전장갑 / 라. 방진마스크 / 마. 방독마스크 / 바. 송기마스크 / 사. 전동식 호흡보호구 / 아. 보호복 / 자. 안전대 / 차.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 카. 용접용 보안면 / 타.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산업안전법 시행령 제77조제1항제3호〉

※ (자율안전확인 보호구) 가. 안전모 / 나. 보안경 / 다. 보안면

(건설산재예방정책과-225, 2024.07.17.)

질의

2) 방안화 구입비용을 보호구 항목으로 사용 가능한지

안전화와 성능과 겉감의 재질이 동일한 방한화를 구입할 경우 보호구 항목으로 사용 가능한지

회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제3호 가목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보호구의 구입·수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호구 항목으로 사용이 가능함.

  - 안전화의 경우 명칭, 재질 등에 구분 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라면 보호구 항목으로 사용이 가능함.

〈 안전인증 보호구 및 자율안전확인 대상 보호구 항목 〉

〈산업안전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3호〉

※ (안전인증 보호구) 가.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 나. 안전화 / 다. 안전장갑 / 라. 방진마스크 / 마. 방독마스크 / 바. 송기마스크 / 사. 전동식 호흡보호구 / 아. 보호복 / 자. 안전대 / 차.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 카. 용접용 보안면 / 타.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산업안전법 시행령 제77조제1항제3호〉

※ (자율안전확인 보호구) 가. 안전모 / 나. 보안경 / 다. 보안면

(건설산재예방정책과-219, 2024.01.15.)

질의

3) 개인소유 안전순찰차량 유지비를 보호구 항목으로 사용 가능한지

안전관리자가 개인 소유한 차량을 안전순찰차량으로 사용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보험료, 수리비 등 유지비를 보호구 항목으로 사용 가능한지

회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제3호 라목에 따라 안전관리자가 선임된 현장의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에 해당하는 비용은 사용이 가능함.

  - 이때, 안전순찰차량이라 함은 안전관리자가 안전순찰을 위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회사 소속 차량에 한정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귀 질의의 차량이 안전순찰차량에 사용되는 경우라면 그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용은 보호구 항목으로 사용이 가능함.

  - 그러나, 차량보험료의 경우는 차량에 대해 실제 주행거리 등과 상관없이 보험기간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회사소유 차량 및 임대차량이 안전순찰을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당해 기간의 비용을 보호구 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개인소유 차량의 경우는 차량의 소유로 인한 보험료는 사용할 수 없고 동 차량을 안전순찰업무에 활용함으로써 추가되는 보험료가 있는 경우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구 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또한 동 차량의 수리비의 경우 안전순찰 업무와 개인 출퇴근 업무가 혼재되어 있어, 그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음으로 차량에 이상이 발생했을 때 안전순찰 용도와의 인과관계가 객관적으로 입증이 될 경우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함.

(2024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집)

질의

4) 방염복 구입비용을 보호구 항목으로 사용 가능한지

고압이상의 충전전로 작업을 위하여 방염복을 구입하여 작업자에게 착용시키는 경우 구입비용을 보호구 항목으로 사용 가능한지

회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호복 구입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는 품목은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열복 및 화확물질용 보호복만 인정하고 있어 보호구 항목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함.

  - 다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0조제2항에 따라 불꽃 또는 아크에 의한 화상우려가 있는 고압 이상의 충전전로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착용시키는 방염복에 한정하여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른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항목으로 사용이 가능함

    * 법·영·규칙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필요한 비용

(건설산재예방정책과-1581, 2025.05.16.)

4. 안전보건진단비 등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사용기준) ① 도급인과 자기공사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예방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4. 안전보건진단비 등

가. 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

나. 법 제47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다. 법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 측정에 소요되는 비용

라. 그 밖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법에서 지정한 전문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진단, 검사, 지도 등에 소요되는 비용

〈참고 : 산업안전보건법〉

※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 제출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 · 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적은 계획서(이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47조(안전보건진단)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추락 · 붕괴, 화재 · 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제48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이하 "안전보건진단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25조(작업환경측정) ①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질의

1) 위험성평가 컨설팅 비용을 안전보건진단비 항목으로 사용 가능한지

당 현장에서 시행 예정인 위험성평가 컨설팅 비용을 안전보건진단비 항목으로 사용 가능한지

회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다른 법령에서 규정된 의무사항 이행(정기검사 등)을 위해 수행되거나, 기계장치의 원활한 작동 등 다른 목적을 포함하고 있는 검사는 불가하며,

  - 건설현장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목적으로 추가 실시하는 각종 안전 진단 및 검사 등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제4호 라목에 따라 안전보건진단비 항목으로 사용이 가능함.

(건설산재예방정책과-2352, 2024.07.24.)

질의

2) 타워크레인 안전검사 비용을 안전보건진단비 항목으로 사용 가능한지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안전검사를 실시할 경우 검사비용을 안전보건진단비 항목으로 사용 가능한지

회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건설기계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서 규정된 의무사항 이행(정기검사 등)을 위해 수행되거나, 기계장치의 원활한 작동 등 다른 목적을 포함하고 있는 검사는 불가하며,

  - 건설현장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목적으로 추가 실시하는 각종 안전 진단 및 검사 등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제4호 라목에 따라 안전보건진단비 항목으로 사용이 가능함.

(건설산재예방정책과-3229, 2023.08.14.)

질의

3) 전기시설 정밀안전진단 비용을 안전보건진단비 항목으로 사용 가능한지

전기공사업법, 전기사업법 등에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전기 수전을 받을 때와 부하 측으로 전기를 공급할 때 전기시설공사 근로자, 시설운용 중 운용 근로자의 안전 보호차원에서 정밀안전진단을 받고자 할 경우 진단비용을 안전보건진단비 항목으로 사용 가능한지

회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전기안전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서 규정된 의무사항 이행(정기점사 등)을 위해 수행되거나, 기계장치의 원활한 작동 등 다른 목적을 포함하고 있는 진단 및 검사는 불가하며,

  - 건설현장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목적으로 추가 실시하는 각종 안전 진단 및 검사 등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제4호 라목에 따라 안전보건 진단비 항목으로 사용이 가능함.

(건설산재예방정책과-892, 2024.03.12.)

5. 안전보건교육비 등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사용기준) ① 도급인과 자기공사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예방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5. 안전보건교육비 등

가. 법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의무교육이나 이에 준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위해 건설공사 현장의 교육 장소 설치·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

나. 가목 이외 산업재해 예방이 주된 목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대상자 등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서, 정기간행물을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마.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기원제 등 산업재해 예방을 기원하는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다만, 행사의 방법, 소요된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적합한 행사에 한한다.

바. 건설공사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제보하거나 개선방안을 제안한 근로자를 격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

〈참고 : 산업안전보건법〉

※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30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 ① 사업주는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1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①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로 하여금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질의

1)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다른 법령상 의무교육만 안전보건교육비 항목으로 사용 가능 한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중 다른 법령상 의무교육인 경우에만 안전보건교육비 항목으로 사용 가능한지

회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이 종전에는 “산업재해 예방 목적을 가진 다른 법령상 의무 교육”으로 한정하였으나, ’25.2.12.부터 “산업재해 예방이 주된 목적인 교육”으로 개정되어 이와 관련된 교육비용은 안전보건교육비 항목으로 사용이 가능함.

(건설산재예방정책과-620, 2025.02.25.)

질의

2)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현장이 아니어도 안전보건 관련 도서 구입 비용을 안전보건교육비 항목으로 사용 가능한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선임 대상이 아닌 현장에서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위해 안전보건 관련 도서를 구입한 경우 비용을 안전보건관리비 항목으로 사용 가능한지

회시

- 안전보건 관련 도서가 현장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구입 및 사용되는 경우라면 동 구입 비용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제5호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안전보건교육비 항목으로 사용이 가능함.

(건설산재예방정책과-2067, 2024.07.02.)

질의

3) 안전기원제 행사 기념품 비용을 안전보건교육비 항목으로 사용 가능한지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기원제 등 행사시 지급한 기념품(수건), 식음료비 등으로 지출된 비용을 안전보건교육비 항목으로 사용 가능한지

회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제5호 마목에 따른 안전기원제 등 산업재해 예방을 기원하는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보건교육비 항목으로 사용이 가능함.

  - 따라서 해당 안전기원제가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행사에 해당하고 동 행사에 참여한 근로자에 한해 기념품 및 식음료가 제공되었다면 안전보건교육비 항목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거나 현장 외부에서 진행하는 안전기원제 등 사회통념에 맞지 않는 행사비 등은 안전보건교육비 항목으로 사용이 불가함.

(2024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집)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사용기준) ① 도급인과 자기공사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예방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가. 법·영·규칙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필요한 비용

나. 중대재해 목격으로 발생한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구입비용 및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라. 법 제128조의2 등에 따른 휴게시설을 갖춘 경우 온도, 조명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마.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심폐소생을 위해 사용되는 자동심장충격기(AED)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바. 온열·한랭질환으로부터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임시 휴게시설 설치·해체·임대 비용 및 냉·난방기기의 임대 비용

질의

1) 배치전 건강진단 비용을 건강장해예방비 항목으로 사용 가능한지

일용직 근로자의 배치전 건강진단 비용을 건강장해예방비 항목으로 사용 가능한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2]에서 정하고 있는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를 취급하거나 노출될 우려가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규정하는 배치전 /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강장해 예방비 항목으로 사용이 가능함

  - 다만, 해당 현장에 소속된 근로자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함

(건설산재예방정책과-269, 2024.01.18.)

질의

2) 산소캔 구입비를 건강장해예방비 항목으로 사용 가능한지

건설현장에서 밀폐공간 작업자들을 위해 산소캔을 구입하는 경우 건강장해 예방비 항목으로 사용 가능한지

회시

- 건설현장 밀폐공간 작업자의 긴급피난 또는 질식·중독 등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산소캔을 구비 및 사용하는 경우라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제6호에 따라 건강장해 예방비 항목으로 사용이 가능함.

(건설산재예방정책과-2050, 2023.05.19.)

질의

3) 작업용 우의 구입비용을 건강장해예방비 항목으로 사용 가능한지

콘크리트 타설 작업시 작업자용 우의를 구입할 경우 비용을 건강장해예방비 항목으로 사용 가능한지

회시

-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우천 시 착용하는 우의의 경우 작업의 편리성이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바 건강장해예방비 항목으로 사용이 불가할 것이나,

  - 콘크리트 타설 작업 등 우의 착용이 반드시 필요한 특정 환경의 작업에서 해당 근로자의 피부질환 등 건강장해 예방 목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건강장해예방비 항목으로 사용이 가능함.

(2024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집)

질의

4) 안전화 건조기 구입비용을 건강장해예방비 항목으로 사용 가능한지

근로자의 안전화 장기 사용에 따른 무좀, 습진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화 건조기를 구입할 경우 구입비용을 건강장해예방비 항목으로 사용 가능한지

회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제6호 가목에 따라 법·영·규칙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근로자의 건강장해예방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강장해예방비 항목으로 사용이 가능 함.

  - 따라서, 장시간 안전화 착용 시 발생될 수 있는 무좀, 습진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화 건조기를 구입할 경우 구입비용은 건강장해예방비 항목으로 사용이 가능함.

(2024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집)

질의

5) 작업장 방역 비용을 건강장해예방비 항목으로 사용 가능한지

건설현장에서 방역비 및 방제관련 제품(방제기, 보호복 등) 구입비용을 건강장해예방비로 사용 가능한지

회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제6호 가목에 따라 법·영·규칙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에 필요한 비용은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는바,

  - 건설현장 내 작업장 방역을 위한 비용 및 방제관련 제품(보호복, 보호장비 등) 구입비용은 건강장해예방비 항목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건설현장 작업장 외 사무실, 기숙사 등 방역을 위한 비용은 사용이 불가함.

(건설산재예방정책과-208, 2024.01.15.)

질의

6) 건강장해예방비 항목으로 구입 가능한 약품의 종류는

건강장해예방비 항목으로 구입 가능한 구급약품, 일반의약품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회시

○ 건강장해예방비 항목으로 구입 가능한 구급약품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2조에서 규정하는 구급용구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품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1) 붕대재료 · 탈지면 · 핀셋 및 반창고
2) 외상용 소독약
3) 지혈대 · 부목 및 들것
4) 화상약(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작업장이나 그 밖에 화상의 우려가 있는 작업장에만 해당)

- 한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제3항제11호에서 정하는 의료위생 약품대 등 작업조건 유지에 직접 관련되는 복리후생비는 공사원가에 반영 토록하고 있어 건강장해예방비 항목으로 사용이 불가함.

(2024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집)

질의

7) 건강관리실 설치비용을 건강장해예방비 항목으로 사용 가능한지

보건관리자가 선임된 현장에서 건강관리실 설치 시 해당 비용을 건강장해 예방비 항목으로 사용 가능한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에서는 사업주는 보건관리자가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시설·장비·예산,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보건관리자의 자격이 「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간호사에 해당하는 경우 건강관리실을 설치하는 비용은 건강장해예방비 항목으로 사용이 가능함.

(건설산재예방정책과-2064, 2024.07.02.)

질의

8) KF94 마스크 구입비용을 건강장해예방비 항목으로 사용 가능한지

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보 발령 시 KF94 마스크 등 보건마스크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건강장해예방비 항목으로 사용 가능한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5조제1호에서는 황사, 미세먼지(PM-10, PM-2.5)를 포함하여 분진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규칙 제617조제1항 및 규칙 [별표16] 제26호에 따라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8호에 따른 황사 경보 발령지역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미세먼지(PM-10, PM-2.5) 경보발령 지역에서의 옥외 작업 등 분진작업시 사업주는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바,

  - 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보 발령 시 건설현장 옥외 근로자의 호흡기 및 뇌심혈관 질환 등 각종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KF94 보건마스크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동 비용은 건강장해예방비 항목으로 사용이 가능함.

(2024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집)

7. 본사 전담조직 근로자 임금 등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사용기준) ① 도급인과 자기공사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예방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사업에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본사 전담조직에 소속된 근로자의 임금 및 업무수행 출장비 전액. 다만, 제4조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참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호 나목〉

※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이 경우 나목에 해당하지 않던 건설사업자가 나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해당 조직을 두어야 한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

질의

1) 시공능력 200위 이내일 경우 토목건축공사업 외 다른 업종은 본사 전담조직 근로자 임금 항목 사용이 가능한지

당 현장은 시공능력 200위 이내인 토목건축공사로서 토목건축공사업이 아닌 산업환경설비공사 현장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본사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경우 본사 전담조직의 임금 및 출장비를 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회시

- 토목건축공사 시공능력 200위 이내의 건설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을 두도록 규정하여 이와 관련된 본사 조직 임금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불가함.

  - 다만, 위에 해당하지 않는 산업환경설비 사업장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두는 경우라면 해당 사업장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분의 1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함.

(건설산재예방정책과-3428, 2024.10.21.)

질의

2) 본사 전담조직 임금을 현장별로 나누어 사용 가능한지

본사 전담조직 임금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다면 본사 관리 현장이 5개일 경우 전담조직에 대한 임금을 5개 현장에서 나누어 사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하나의 현장에서 전체 사용해야 하는지

회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제8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용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건설 사업자(시공능력 순위 상위 200위 이내)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사업에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본사 전담조직에 소속된 근로자의 임금 및 업무 수행 출장비 등을 말하고 있는 것인바,

  - 시공능력 순위가 상위 200위를 초과하는 건설사의 경우라면 본사 전담조직의 임금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 다만, 본사 전담 안전조직에 대한 임금을 한 현장에서만 지급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부족분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여러 현장에서 적절하게 배분하여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동 조항에 따라 개별 현장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사용이 가능함.

(2024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집)

8. 위험성평가 등을 통해 사용 가능한 비용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사용기준) ① 도급인과 자기공사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예방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9.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호에 따라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 제24조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 제75조의 노사협의체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비용(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가 없는 현장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법 제6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결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비용을 말한다). 다만, 제4조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참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참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호〉

※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질의

1) 위험성평가 등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이 무엇인지

각반, 장화, 턱끈 등 품목을 위험성 평가를 통해 노사협의체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가능한지

회시

- 원칙적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제9호에 따라 개별 건설현장 특성에 따라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험성 평가 등을 통해 노사협의체* 등에서 결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함

  * 노사협의체가 없는 현장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결정한 사항

- 따라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한계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사회통념상 허용 가능한 범위라면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해당 건설현장 특성상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한 품목에 대하여 사용이 가능할 것임.

(건설산재예방정책과-3339, 2024.10.30.)

질의

2) 위험성 평가 및 노사협의 등을 통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을 결정하는 절차는

위험성 평가 또는 유해·위험요인 개선 및 노사협의 등을 통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을 결정하는 절차에 대해 알고 싶음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 또는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 제4조 제3호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통해 발굴한 품목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노사협의체에서의 결정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음.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노사협의체 등 구성 의무가 없는 120억 원 미만 중소규모 현장의 경우에는 근로자 의견을 들어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결정이 가능하며

- 위험성 평가 등을 통해 결정하는 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함.

산안법 제36조 “위험성평가” 또는 중처법시행령 제4조3호 “유해 · 위험요인 개선”	→ 사용가능 품목발굴 →	① 산안법 제24조 산업안전보건 위원회에서 사용 결정 ② 산안법 제75조 노사협의체에서 사용 결정 ③ 산안법 제64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사용 결정

(2024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집)

질의

3) 미인증 보호구 구입비용을 위험성평가 등을 통해 사용 가능한지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가 아닌 미인증 보호구 지급이 필요한 경우 위험성평가 등을 통해 비용 사용이 가능한지

회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제3호 가목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3호 및 제7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호구에 대하여 구입·수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호구 항목으로 사용이 가능함.

  - 다만, 동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보호구의 경우에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제9호에 따라 건설현장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험성평가 등을 거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에서 결정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0분의 15 범위 이내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임.

〈안전인증 보호구 및 자율안전확인 대상 보호구 항목〉

〈산업안전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3호〉

※ (안전인증 보호구) 가.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 나. 안전화 / 다. 안전장갑 / 라. 방진마스크 / 마. 방독마스크 / 바. 송기마스크 / 사. 전동식 호흡보호구 / 아. 보호복 / 자. 안전대 / 차.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 카. 용접용 보안면 / 타.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산업안전법 시행령 제77조제1항제3호〉

※ (자율안전확인 보호구) 가. 안전모 / 나. 보안경 / 다. 보안면

(건설산재예방정책과-4756, 2023.12.20.)

질의

4) 방한용품 구입비용을 위험성평가 등을 통해 사용 가능한지

혹한기에 방한복, 방한모, 방한화, 방한장갑, 목토시, 귀덮개 피복 등을 근로자에게 지급이 필요한 경우 위험성평가 등을 통해 비용 사용이 가능한지

회시

- 근로자 피복비용 등은 공사원가 작성시 경비(복리후생비로)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음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2항제1호에서는 「(기재부 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9조제3항(경비)에 해당하는 비용은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건설현장 유해·위험 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험성평가 등을 거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에서 결정한 경우에는 총액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건설산재예방정책과-273, 2024.01.18.)

질의

5) 휴게시설 의자 구입비용을 위험성평가 등을 통해 사용 가능한지

혹서기 또는 혹한기 기간 중에 임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휴게시설 내에 테이블, 의자 등 설치가 필요한 경우 위험성평가 등을 통해 비용 사용이 가능한지

회시

- 온열·한랭질환으로부터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임시 휴게시설 설치·해체·임대비용 및 냉난방기 임대비용은 건강장해예방비 항목으로 사용이 가능하나,

  - 테이블, 의자 등은 복리후생 목적도 포함하고 있어 원칙적으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불가함.

  - 다만, 건설현장 유해·위험 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험성평가 등을 거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에서 결정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음.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2항제1호에서는 「(기재부 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9조제3항(제11호 :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비용은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건설산재예방정책과-2808, 2024.09.03.)

9. 사용불가 항목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사용기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급인 및 자기공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 제1항제6호나목부터 마목, 제1항제9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제19조제3항 중 각 호(단, 제14호는 제외한다)에 해당되는 비용
2.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3. 근로자 재해예방 외의 목적이 있는 시설 · 장비나 물건 등을 사용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4. 환경관리,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제3항〉

※ ① 경비는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원가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된다.

③ 경비의 세비목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8. 가설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현장사무소, 창고, 식당, 숙사, 화장실 등 동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노무비, 재료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1. 복리후생비는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종사하는 노무자 · 종업원 · 현장사무소직원 등의 의료위생약품대, 공상치료비, 지급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등 작업조건 유지에 직접 관련되는 복리후생비를 말한다.
15. 소모품비는 작업현장에서 발생되는 문방구, 장부대등 소모용품 구입비용을 말하며, 보조재료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16. 여비 · 교통비 · 통신비는 시공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 및 차량유지비와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질의

1) 오후에만 신호수 업무를 한 경우 임금을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항목으로 사용 가능한지

오전에는 시공업무를 하고, 오후에는 신호수 업무만을 진행하였을 경우 오후 노무비는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항목으로 사용 가능한지

회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제1호(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임금) 다목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업무만을 수행하는 작업지휘자, 유도자, 신호자 등의 임금전액을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음.

- 다만, 시간대별로 구분하여 다른 업무를 병행해서 수행하거나 산업재해 예방 이외의 목적을 일부라도 포함하고 있다면 산업재해 예방 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항목으로 사용이 불가함.

(건설산재예방정책과-3656, 2024.11.27.)

질의

2) 비계에 설치하는 안전난간의 설치비용을 안전시설비 항목으로 사용 가능한지

발주자가 계상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비계에 별도로 설치하는 안전난간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안전난간의 설치 비용을 별도로 산정해야 하는지

회시

-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국토교통부)」에 따라 비계 등 가설비는 공사비 원가계산시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있어, 안전난간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불가함.

  - 다만, 근로자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안전난간 시설의 보완 등이 필요하여 추가적인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라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시설비 항목으로 사용이 가능함.

(2024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집)

질의

3) 승강기 작업용 작업발판 설치비용을 안전시설비 항목으로 사용 가능한지

승강기 골조작업 시 근로자의 작업을 위한 작업공간에 안전발판을 설치하는 경우 안전시설비 항목으로 사용 가능한지

회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2항제3호에서는 근로자 재해예방 목적 외 공사수행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안전발판, 안전통로, 안전계단 등과 같이 명칭에 관계없이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한 가설시설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불가하도록 정하고 있음

  - 작업발판 등의 경우 근로자가 고소작업 시 안전한 작업환경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공사수행을 위한 작업공간을 구성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므로 예정가격 작성 기준 등에 따라 공사비에 반영해야 하는 시설로 판단됨.

- 귀 질의의 안전발판 또한 승강기 골조작업 시 근로자의 작업을 위한 작업공간의 목적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시설비 항목으로 사용이 불가함.

(2024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집)

질의

4) 방화포 구입비용을 안전시설비 항목으로 사용 가능한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8]에 해당하는 임시소방시설 중 방화포 설치 의무대상 공사에서 방화포를 안전시설비 항목으로 사용 가능한지

회시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8]에 따라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 현장에서 방화포 설치 기준에 따라 의무사항 준수를 위해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제2항제2호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불가하므로, 발주자와 협의하여 공사비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함.

  - 다만, 그 외 용접·용단 등 작업 시 화재 예방 및 근로자 보호 목적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것이라면 이에 해당하는 비용은 안전시설비 항목으로 사용이 가능함.

(2024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집.)

질의

5) 도로공사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비용을 안전시설비 항목으로 사용 가능한지

도로현장에서 근로자와 일반차량이 혼재되어 운영되는 경우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비용을 안전시설비 항목으로 사용 가능한지

회시

- 도로 확·포장공사, 관로공사, 도심지 공사 등에서 공사차량 외의 차량유도, 안내·주의·경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교통안전시설물(공사안내경고 표지판, 차량유도등, 점멸등, 라바콘, 현장경계휀스, PE드럼등) 및 공사수행에 필요한 안전시설물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시설비 항목) 사용이 불가함.

  -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근로자의 재해예방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타법에 의한 비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도 사용이 불가함.

  - 따라서 귀 질의의 도로현장이 근로자와 일반차량이 혼재되어 운영된다면 동 현장의 교통안전시설은 안전시설비 항목으로 사용이 불가함.

- 참고로 도로건설현장의 교통안전시설비 설치비용은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관리비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별표7]

-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호(공사장 주변의 통행 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비용)

  * PE드럼, PE휀스, 주의표지판, 규제 표지판, 라바콘 등

(2024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집)

질의

6) 안전관리자 사무실 설치비용을 안전보건교육비 항목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안전·보건관리자 또는 안전지킴이가 사용하는 가설 사무실, 휴게실 설치 및 운영비를 안전보건교육비 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시

- 안전·보건관리자 등 현장근무자를 위한 사무실 등의 공간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9조제3항제8호에 따르면 공사원가 계산시 경비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불가함.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2항제1호에서는 「(기재부 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9조제3항(경비)에 해당하는 비용은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건설산재예방정책과-121, 2025.01.09.)

질의

7) 교육시 점심식사 비용을 안전보건교육비 항목으로 사용 가능한지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 목적의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점심식사를 제공할 경우 비용을 안전보건교육비 항목으로 사용 가능한지

회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 시 교육에 참석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음료의 경우 안전보건교육비 항목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이나, 중식 등은 안전보건교육비 항목으로 사용이 불가함.

(건설산재예방정책과-621, 2025.02.25.)

질의

8) 간호사 보수교육 비용을 안전보건교육비 항목으로 사용 가능한지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보수교육)에 따른 간호사 보수교육 비용을 안전보건교육비 항목으로 사용 가능한지

회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제5호 나목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이 주된 목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보건교육비로 항목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귀 질의의 간호사 보수교육의 경우 건설현장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간호사 자격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교육으로 판단되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보건교육비 항목으로 사용이 불가함.

(건설산재예방정책과-629, 2024.02.19.)

질의

9) 휴게시설 설치비용을 건강장해예방비 항목으로 사용 가능한지

근로자 쉼터 목적으로 컨테이너를 구입하는 경우 건강장해예방비 항목으로 사용 가능한지

회시

- 휴게시설은 공사원가 작성시 경비(가설비)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을 원칙적으로는 허용을 하지 않고 있음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2항제1호에서는 「(기재부 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9조제3항(경비)에 해당하는 비용은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휴게시설을 갖춘 경우 온도, 조명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이 가능하며,

  - 온열·한랭질환으로부터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컨테이너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비용은 사용이 가능함.

(건설산재예방정책과-226, 2024.01.15.)

질의

10) 사다리 구입비용을 노사협의체 등에서 결정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가능한지

정보통신공사업에서 경량이동식 A형 사다리 제작·구입 비용을 위험성 평가 및 노사협의체를 통하여 결정하면 구입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2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사용되는 비용으로 정의하고 있음.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제9호에서 노사 간 자율결정 항목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작업도구로 활용되는 A형 사다리 등의 제작·구입 비용까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는 것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가능 한계를 크게 벗어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건설산재예방정책과-2934, 2023.7.25.)

10. 공사 진척에 따른 사용기준 및 관계수급인 사용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사용기준) ③ 도급인 및 자기공사자는 별표 3에서 정한 공사진척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용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도급인 및 자기공사자는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에서 그의 관계수급인에게 해당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질의

1) 공정률에 따라 사용기준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지

공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사용기준에 맞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해야 하는지, 만약 사용기준 이하로 사용할 경우 감액 조치하여야 하는지

회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3]에서는 공정률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 예를 들어 공정률이 89%일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70% 이상을 사용하면 되고, 공정률이 91%일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90% 이상을 사용하면 되는 것임.

  - 참고로 동 규정은 처벌 규정은 없으며, 사용기준 이하로 사용한다고 하여 감액 등의 조치는 불가함.

(2024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집)

질의

2) 관계수급인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가능한지

하도급을 받은 업체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 받아 사용이 가능한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9조제1항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4항에 따라 건설공사 도급인은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에서 그의 관계수급인에게 해당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귀 질의와 같이 관계수급인이 동 고시 제7조(사용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한 경우라면 해당 내역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임.

(건설산재예방정책과-2480, 2024.08.02.)

제4장 사용금액의 감액 · 반환 등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사용금액의 감액 · 반환 등) 발주자는 도급인이 법 제72조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참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2항〉

※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사업의 규모별 · 종류별 계상 기준
2. 건설공사의 진척 정도에 따른 사용비율 등 기준
3.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

질의

1) 공동도급 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방법은

공동도급으로 '갑'사 51%와 '을'사 49% 지분으로 공동이행 중인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어떻게 정산하는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공동도급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발주자로부터 공동도급을 받은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 범위에서 갑, 을사의 지분율 또는 계약내용에 따라 정산이 가능할 것임.

(건설산재예방정책과-3034, 2023.08.01.)

질의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초과 사용시 정산이 가능한지

현장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초과 사용한 경우 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서는 초과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과 관련된 내용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초과 사용에 대한 정산 여부는 발주자와 도급인이 관계 계약 법령 등을 참고하여 협의 처리하여야 할 것임.

(건설산재예방정책과-326, 2023.1.19.)

제5장 사용내역서 작성 및 확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9조(사용내역의 확인) ①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6개월 이내에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 시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 감리자 및「근로기준법」제101조에 따른 관계 근로감독관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을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도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발주자 또는 감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확인 시 기술지도 계약 체결, 기술지도 실시 및 개선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실행예산의 작성 및 집행 등) ① 공사금액 4천만 원 이상의 도급인 및 자기공사자는 공사실행예산을 작성하는 경우에 해당 공사에 사용하여야 할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실행예산을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 이상으로 별도 편성해야 하며,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해당 공사 현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도급인 및 자기공사자는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실행예산을 작성하고 집행하는 경우에 법 제17조와 영 제16조에 따라 선임된 해당 사업장의 안전관리자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질의

1) 사용내역 확인시 공사시작 시점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을 확인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공사 시작을 언제로 보는지

회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9조에서는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사에서 도급받은 공사가 실질적으로 시작되는 시점, 즉 근로자들이 투입되어 해당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필요성이 있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며, 이후 6개월 주기로 사용 내역을 확인 받으면 될 것으로 판단됨.

(건설산재예방정책과-410, 2024.01.29.)

질의

2) 안전용품을 사용전에 반드시 감리자 검수를 받아야 하는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을 6개월마다 1회이상 감리자에게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안전용품에 대해서도 감리자가 사용전에 반드시 검수(날인 등)해야 하는지

회시

- 발주자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목적 외 사용 등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사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9조에 따라 공사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확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의 안전용품 반입 시 감리인의 검수 및 날인 여부 등과 같이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작업상황 등을 고려하여 건설공사 발주자, 감리자 및 도급인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판단됨

  - 다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확인을 이유로 필요한 사용시점을 늦추게 하거나 적법한 사용을 제한해서는 안 될 것으로 판단됨.

(2024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집)

제6장 안전관리자 제도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안전관리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자격·업무·권한·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를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참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제16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②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제1항에 따른 사업 중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을 말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에 1명의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의 합계는 300명 이내[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의 합계가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내]이어야 한다.

질의

1) 차수공사에 대한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은

차수공사, 연차공사 등에 대한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이 되는 공사금액을 차수 공사금액으로 적용하면 되는지

회시

- 원칙적으로 차수공사 등 연차공사의 경우 전체공사의 총공사금액을 적용함.

(건설산재예방정책과-2969, 2022.9.16.)

질의

2) 공사기간 특례 적용시 안전관리자 선임 수는

총공사금액이 1,969억 원, 도급인(원청) 공사금액 1,716억 원, 관계수급인A 114억 원, 관계수급인B 139억 원일 때 공사기간 특례의 안전관리자 선임 수는

회시

- 원칙적으로는 관계수급인A, B는 자신이 도급받은 공사금액에 따라 각각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도급인(원청)은 총 공사금액에서 관계수급인 A,B 의 공사금액을 제외한 공사금액(1,716억 원)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함.

  - 따라서, 현재 도급인은 안전관리자 3명(산업안전지도사등 1명 포함) 선임하고, 관계수급인 A,B가 각각 안전관리자 1명씩을 선임하여야 함.

-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인 공사기간 특례 적용 시 도급인은 안전관리자 2명 이상 선임하고, 관계수급인의 경우는 해당 공사가 종료될 때 까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건설산재예방정책과-2765, 2023.7.17.)

질의

3)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구체적으로 언제로 봐야 하는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의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에서 말하는 공사기간은 일반적으로 도급계약서상 명시된 공사기간을 말하며,

  - 예를 들어 공사기간이 '22.1.1.~'22.12.31.인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기간 중 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1년 365일 중 55일인 '22.1.1.~'22.2.24.'로 보면됨.

(건설산재예방정책과-3560, 2022.10.26.)

질의

4) 도급인이 대신하여 관계수급인의 안전관리자 선임이 가능한지

공사금액 600억원 인 경우, A협력사 하도급 공사금액이 300억원 일때 도급사에서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수는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별표3에 따라 원칙적으로 관계수급인 A는 도급받은 공사금액이 100억원 이상이므로, 자신이 도급받은 공사금액(300억원)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 도급인(원청)은 총공사금액(600억원)에서 관계수급인A 공사금액을 제외한 공사금액(300억 원)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함.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5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① 도급인이 총 공사금액에서 관계수급인A의 공사금액을 제외한 공사금액에 따라 안전관리자(즉, 자신이 선임해야 할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② 도급인이 추가로 관계수급인A의 공사금액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면,

  - 관계수급인 A는 자신의 공사금액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음.

(건설산재예방정책과-2773, 2023.7.17.)

질의

5)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선임이 가능한지

50억원 이상의 공사 현장마다 안전관리자를 채용하는 것은 안전관리자 인건비가 부담되는데 한명의 안전관리자가 여러 시공현장의 안전관리를 할 수 없는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16조제4항에 따라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에 1명의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선임할 수 있으나,

  -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내면서 ① 같은 시·군·구(자치구)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② 사업장 간의 경계를 기준으로 15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경우라면 1명의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선임할 수 있음.

(건설산재예방정책과-412, 2024.01.29.)

질의

6) 여러개 현장이 동일지역에 있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안전관리자를 선임해도 되는지

- A제조업체 ○○○공장내에서 설비의 교체 및 추가 설치공사를 진행하는 건설업체
- 설비의 교체 및 추가 설치공사는 건별로 계약이 체결되어 진행
  - 1년에 30건 정도의 공사계약이 체결
  - 10~20건의 공사가 동시에 진행
- 공사기간은 계약 건별로 서로 상이(최소 1개월~10개월 등)
- 30건의 공사금액은 건 별 1억 원 미만~ 40억 원
- 30건의 계약된 총공사금액의 합은 900억 원
- 각각의 공사는 ○○○ 공장의 울타리 안에서(시간적, 장소적으로 동일한 장소) 동일한 현장관리 조직이 작업을 수행

30건의 계약공사를 ○○○공장 안에서 동일한 시공사, 동일한 공사조직이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등 관리를 해야하는지

회시

-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장소적으로 서로 인접하면서 동일한 공사 조직 및 체계하에서 시공되고 있는 경우라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있음.

- 다만, 동일한 장소라 할지라도 노무관리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규모·조직·운영·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있는 경우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동일한 장소 내에 소재하여 동일한 시공사, 공사조직으로 공사가 수행되는 경우라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관리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됨.

(건설산재예방정책과-1125, 2024.04.01.)

질의

7) '21년 착공 공사의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안전관리자 선임 면제 가능한지

- 공사 계약 금액 : 65억
- 최초 계약 일자 : 2021년 07월 19일
- 1차 착공일 : 2021년 9월 08일
- 공사 중지 : 2021년 9월 30일 ~ 2022년 3월 13일
- 2차 착공일 : 2022년 3월 14일 ~ 현재

2021년 9월 착공 시 공사 금액은 65억이었으나,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2023년 8월 88억 원으로 변경되었음. 상기 내용에 따라 착공일 기준 종전 규정 적용 시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되는데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회시

- '20.1.16.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건설공사는 착공일 기준으로 '20.7.1.부터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21.7.1.부터 공사금액 80억원 이상, '22.7.1.부터 공사금액 60억원 이상, '23.7.1.부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되었음.

  - 따라서 귀 현장의 경우 '21.7.19. 착공하여 이후 80억 원 이상으로 계약변경된 경우라면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할 것임.

(건설산재예방정책과-4114, 2023.10.27.)

질의

8) 동절기 휴식기간 안전관리자 선임을 해지할 수 있는지

150억원 미만 토목공사 현장의 12월~2월 동절기 휴식기간에 해당 현장 안전관리자의 선임을 해지 후 다른 현장에 선임할 수 있는지

회시

- 해당 건설공사를 진행하면서 안전조치를 하여 보호할 근로자가 있는 기간 동안 안전관리자는 선임해야 하는바, 원칙적으로 공사중지 등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기간에는 안전관리자가 없어도 될 것으로 보임. 하지만, 현장 내 정리정돈, 순회점검 등으로 안전조치를 하여 보호할 근로자가 출력한다면 안전관리자의 선임(유지)이 계속 필요하다고 판단됨.

(건설산재예방정책과-152, 2024.1.11.)

질의

9) 시운전 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해야 하는지

건설공사 종료 후 '차량 시운전' 등의 공정만 진행될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회시

- 안전관리자의 선임은 도급계약서上 공사기간 중 선임해야 하며, 건설공사가 종료된 상태에서 건설공사와 무관한 '차량 시운전' 등의 공정만 진행될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됨.

- 다만, 공사 준공(종료) 등이 도급계약서와 다른 경우 통상 사업주가 해당 건설공사를 진행하면서 안전조치를 하여 보호할 근로자가 있는 기간에는 도급계약서上 공사기간 종료와 상관없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건설산재예방정책과-4302, 2022.12.20.)

질의

10) 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겸직이 가능한지

건설현장 안전관리자가 소방 안전관리자 자격이 있는 경우 겸직을 할 수 있는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인 공사의 안전관리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만 전담을 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인 경우라면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겸직은 불가하며, 이 규모 미만의 건설현장 안전관리자는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다른 업무수행은 가능함.

  - 다만, 소방안전관리자의 해당 업무 겸직 여부 등은 해당 법률 소관 부처인 소방청에 별도 문의가 필요함.

(건설산재예방정책과-1424, 2023.04.10.)

질의

11) 전담 안전관리자가 보건관리자 업무 겸직이 가능한지

당 현장은 공사금액이 12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에 해당되어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은 아니나,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하고 있는 안전관리자가 보건관리자 업무를 겸임할 수 있는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인 공사의 안전관리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만 전담을 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인 경우라면 보건관리자 업무 겸직은 불가함.

(건설산재예방정책과-1125, 2024.09.1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 및 질의회시집

발 행 일 2025년 6월

기　　획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최태호
건설산재예방정책과장 황효정
제　　작 건설산재예방정책과 사무관 권오준
전문위원 류채은